

특이하다.

이와 같이 대만의 신분등록제도는 호적등기가 다양하여 활용도가 높고, 공동사업호를 인정하여 현실 공동생활단위를 관리 가능하며 주소변경등기로서 주민등록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반면에 공동생활호의 단위가 큰 규모이므로 대가족제도의 잔영이 남아있다.

3. 호적업무 담당부서 조직, 업무내용 및 전산화

가. 조직 및 업무내용

(1) 내정부 호정사(內政部戶政司)

내정부 호정사는 우리 법원행정처 법정국에 해당되는 부서로, 모든 호적에 관한 입법과 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이다. 호적행정과, 국적행정과, 호구조사과, 인구정책과, 호적작업과, 호적인원훈련과로 구성되어 있다.

(2) 시·현정부 민정국

호정사무소(호적관서)의 호적사무에 대해서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부서로 우리 감독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25개소가 있다.

(3) 호정사무소(호적관서)

호정사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되어 전국에 374개소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지원 업무만 하고, 별도의 호정사무주임을 두어 이로 하여금 호적사무 일체를 처리하고 있다.

그 업무내용으로는, ① 호적등기(개인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즉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등기를 하고 있다. 개인의 주소이전과 개인별 최초 호적등재 업무를 하고 있다), ② 국적에 관한 사무(국적의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업무), ③ 국민신분증 발급, ④ 인감의 등록 및 증명발급, ⑤ 호적등본 발급(중국어, 영어), ⑥ 도로명 명명, 주소, 번지수 부여

나. 호적사무 전산화

대만은 이미 2000년에 호적사무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다만 제적부에 대하여는 전산화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IV. 미국

1. 특징

가. 사건별 편제방식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당연히 미국국민이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출생기록(인구동태기록)이 국민기록(국적기록)이다.

미국에서는 출생, 사망 등의 기록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친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그리고 사건마다 각각 신분등기한다. 철저한 사건별 편제제도이다. 따라서, 신분기록부도 출생(Birth section), 사망(Death section), 혼인(Marriage section)으로 나누어 각각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혼기록은 법원이 보관한다.

나. 신분등록부 사이에 연결 기재 없음

연방정부의 상무성 인구동태 통계국은 國勢調査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정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출생, 사망, 혼인증명서는 州의 중앙인구동태기록소 또는 郡등록소에서 영구히 보존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 관한 정보는 상호 접근이 가능하도록 또는 연결되는 등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즉, 각 신분기록은 본인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집단은 한번에 알 수 없으며, 또한 각각 기록 사이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이 모두 그 자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로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잔존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년을 적어서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속제도는 원칙으로 유언상속이다. 즉, 친족(가족)기록이 없기 때문

에, 유언으로 구체적인 상속인을 정하는 것이다.

2. 신분등록부

가.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

(1) 기록사항

출생은 출생증명서로 증명된다. 출생은 일반적으로 출산에 입회한 의사가 주의 인구동태통계국으로 문서로 신고하고, 통계국이 이를 편철한다. 출생기록부는 신고인이 제출한 출생증명서(certification of birth)를 연도별로 편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 기록란에는 자녀의 성명, 성별, 쌍생아인지 여부, 생년월일시, 출생지, 병원명, 부모의 성명, 연령, 주소, 그 출생지(시, 주 또는 국가명), 아버지의 직업 등이며, 의사의 서명란이 있다. 그 형제자매란은 없다.

접수한 출생증명서는 기록번호를 붙여 연도별로 편철한다. 이 출생증명서를 검색하기 위하여 출생자의 성명을 알파벳순으로 하여 색인을 작성한다.

비적출자일 때는 부친란은 빈칸이며, 모친란만을 기록한다. 비적출자가 성장하여 결혼하더라도 부친란은 빈칸 그대로이다.

(2) 등록의무자

출생등록의무자는 자녀가 출생한 병원의 의사나 간호부, 조산부이며, 자녀의 성명, 출생장소, 부모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담당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공중위생을 위한 비밀정보로서 부모의 인종, 직업, 교육, 의료정보로서 임신기간, 분만방법 등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州)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출생 후 5일 이내에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여야 하며, 뉴욕시에서는 2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등록에 대해서는 주(州)보건위생국에서 감독·보관을 하며, 출생등록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후견인, 본인에게만

발행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등록사무소의 지방등록관에게 10일 이내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사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가장 가까운 郡등록관·郡서기사무소(Registra Recorder/Clerk Office)에 가거나 우편으로 출생기록을 신청하면 출생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출생증명서는 혼인이나 여권취득, 사회보장등록, 취직,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등 각종절차에서 필요하다.

나.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

혼인은 관청에서 발행한 결혼허가증으로 증명하며, 혼인기록부란 신고받은 주(州)의 기록청이 결혼허가증을 편철한 것을 말한다.

(1) 혼인의사통지서

미국 대부분 주에서 정식혼인(formal marriage)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에서 발행한 결혼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에서는 관습법상 결혼, 즉 내연관계(common-law marriage)를 인정하며, 이 때는 결혼허가증이 필요없다. 또한, 일부 종교집단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결혼허가증을 관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조지아, 메릴랜드, 오하이오주에서는 혼인예고가 허가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텍사스주에서는 가족법에 따라 "Declaration and Registration of Informal Marriage"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허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선, 당사자는 city 또는 town의 사무관(clerk)에게 출석하여 혼인의사가 있음을 기록한다. 이것이 결혼허가증의 신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관청에 혼인당사자 두 사람 출석하여 혼인의사를 통지한다. 혼인의사통지서양식이 있으며, 그 용지에 적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혼인의사통지서에는 대체로 남편과 아내 각각의 현재 성명, 혼인 뒤 성(姓), 연령, 현주소, 초혼·재혼 등의 혼인 경력, 사별 또는 이혼 경력, 직업, 출생지, 부모의 성명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 용지에는 근친혼과 같은 혼인장애가

없다는 문언, 그 적은 사실이 진실임을 맹세하는 인쇄 문언과 서명란이 있으며, 그밖에 허위기록·선서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문언도 있다.

이러한 혼인의사통지서 외에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출생증명서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혼증명서등본은 그 이혼을 인정한 지방법원에서 발급한다.

혼인의사통지서를 접수하면 혼인의사통지번호를 정한다. 그리고 혼인의사통지의 색인카드를 작성하여, 그 번호, 남편이나 아내의 성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2) 결혼허가증

혼인의사통지서를 접수했다라도 바로 결혼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자는 건강진단서(medical certificate)와 혼인의사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째나 그 뒤(다만 접수 뒤 60일 이하)에야 당사자에게 혼인증명서(certification of marriage),를 발급한다.

이 건강진단서는 그 주에 등록하고 개업하고 있는 자격 있는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 한편, 혼인의사통지서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접수되며, 위 대기기간 '3일째' 기산계산방법은 혼인의사통지서를 접수한 날(결혼허가증 신청일이라 해도 좋다)은 기산하지 않으나 일요일은 셈한다. 예컨대, 금요일에 신청했을 때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그 뒤에야 혼인증명서를 발급한다.

혼인증명서에는 담당공무원이 서명하고, 혼인의사통지접수날짜, 법에 따라 확정하고 기록할 것을 요청한다는 관계사항을 인쇄하고 있으며, 목사 등 주례자에 관한 사항(그 성명 등)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그것을 예식 전에 주례자(주례는 우리 나라처럼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한다. 즉, 주 내에 주소를 가진 목사(minister of gospel, clergyman, priest, rabbi)와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만이 주례할 수 있다.)에게 건네고, 예식 후 주례자가 서명하여 돌려준다. 당사자가 그것을 기록청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고 접수일자를 적으며, 또한 기록번호(marriage number)를 붙인다. 이로써, 완전한 혼인증명서로서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결혼허가증' 혹은 '결혼허가증을 발행했다'라고 한다.

결혼허가증은 원본으로서 관청에서 보존한다. 결혼허가증을 보유하고 싶은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은 그 형식과 내용이 같은 것(복본)을 발급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주에서 결혼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청에서는 실체를 조사할 권한도, 조사할 수도 없다. 당사자의 신청을 믿고 결혼허가증을 발행한다. 다만, 이혼증명서를 요구할 뿐이다. 다른 주(州)에서 이사했을 때나 그 반대일 때, 한쪽 주 관청에서 상대방 주의 관청으로 통지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군서기로부터 5달러의 비용으로 결혼허가증을 발행받아 90일 이내에 종교혼 또는 민사혼의 거식을 올리지 않으면 그 허가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군서기는 각 허가증에 번호를 붙이고, 그 일람표를 군기록관(the county recorder)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예식을 올리는 자는 당사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해줄 것을 청구하여, 예식 후에는 예식 연월일, 직명, 성명을 기재하여 혼인등록소에 반송한다. 즉, 혼인의 절차 및 등록은 허가증의 신청·발행, 예식자의 예식보고서 반송, 혼인등록부에 대한 파일이라고 하는 순서로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3) 결혼허가증의 검색

결혼허가증을 발행했을 때는 그 원본을 발행연도별로 편철하고, 또한 그 연도마다 기록번호순으로 편철한다.

결혼허가증을 검색하기 위한 색인(Index of Marriage)으로서 각 해의 것과 10년간의 한 묶음으로 한 통합색인(consolidated Index)이 있다. 남편과 아내 각각의 혼인 전 마지막 성명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각각에 연도별로 기록번호를 부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와 남편이나 아내의 혼인 전 마지막 성명을 알 수 있을 때는 이 색인에 따라 기록번호를 파악하여, 그것을 실마리로 결혼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를 잘 모르더라도 통합색인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검색용이라 할 수는 없으나, 혼인기록부(marriage record)라는 연도별 장부가 있으며, 이 장부는 결혼허가증의 원본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즉, 그 기록에는 기록번호순으로 누구와 누구가 언제 혼인했으며, 그 주례자가 누구였는지, 당사자의 직업, 연령, 혼인력, 부모의 성명 등을 표로 정리하고 있어, 약식 결혼허가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결혼허가증을 검색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결혼허가증을 열람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사람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한 자 이외의 자가 기록을 복제할 때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다. 이혼사건표(Divorce Docket)

미국에서는 부부가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 시키는 협의이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그 이혼재판기록은 법원이 편철 보관한다. 이것을 이혼사건표라고 한다.

미국의 이혼건수가 연간 120여만 건에 달하며, 또한 이혼사건의 약 85-90%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없기 때문에 재판소의 사건부담경감,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공동신청에 따라 사건처리를 할 수 있는 간이이혼절차가 도입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78년부터 단기간에 자녀나 재산이 거의 없는 혼인을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간이이혼절차(summary dissolution procedure)를 설치하였다.

결혼허가증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했을 때, 이혼선고한 법원은 그 이혼선고 사실을 그 혼인기록청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가 혼인기록청에 통지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annulment)했을 때는 법원이 혼인기록청에 통지하며, 기록청에서는 해당하는 당사자(남편·아내)란 성명에 선을 그어 말소하고, 왼쪽에 혼인취소(Annulment)라 기록한다. 혼인을 취소했을 때와는 별개로, 결혼허가증이 나오고 있는 혼인당사자가 지금 이혼하고 있는가 여부는 혼인기록청으로서는 알 수 없다.

민사법원에서는 이혼관계장부, 유언검인, 유언관리, 후견관계기록을 보관한다. 그 기록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유언검인·유언관리·후견관계기록은 복사할 수 없다. 이혼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는 그 성명이나 신분, 목적 등, 어떤 사항도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혼사건표를 열람하기 전에 우선 'Index Divorce'을 조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은 기간을 특정하게 나누어 한 묶음으로 하고, 당사자 명을 그 마지막 성명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사건신청연도, 이혼이나 혼인취소인지 여부, 원·피고 여부, 사건번호를 부기한 것이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혼사건표를 찾을 수 있다. Index Divorce는 장부이지만, 'divorce Index'라는 카드도 따로 있고, 당사자의 성명을 알고 있더라도, 그 연도가 불확실할 때는 이 카드에 따라 당사자 성명만으로 사건번호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사건표는 사건번호 순으로 편철하는데, 단지 이혼판결 요점뿐 아니라 당사자의 성명, 주소, 변호사의 성명, 이혼원인, 자녀의 성명은 물론이고, 이혼신청, 결혼허가증의 제출연월일부터 시작하여 공시송달신청, 최종진술제출연월일 등, 절차진행이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이혼선고 뒤 변경사항도 기록한다. 절차가 이혼선고에는 이르지 않았을 때는 그 단계까지 기록한다. 다만, 이러한 기록은 손으로 직접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는 혼인무효일 때도 기록한다. 기록양식은 이혼과 같다. 다만, 이혼일 때는 사건번호가 '이혼(divorce no -)'인데, 혼인무효일 때는 '이혼(divorce)'을 말소하고, '무효(Nullity)'로 고치고, 신청원인이 '허위와 사기 표시(False & Fraudulent representation)'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라. 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사망은 사망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사망증명서는 결혼허가증의 원본과 거의 같은 크기이다. 그 내용은 사망연월일, 사망자의 성명, 성별, 인종, 독신

인지, 사별한 자인지, 이혼한 자인지 등 신분관계, 연령, 주소, 직업, 생년월일, 출생한 주(미국이 아닐 때는 그 나라 명), 부모의 성명과 출생한 주(미국이 아닐 때는, 역시 그 나라 명), 모의 혼인 전 성명, 사망자의 서명, 매장지, 매장일, 사망자의 생존배우자의 성명 등이다.

의사는 사망증명서에 사망자의 성명, 사망원인, 사망연월일을 기록하여 서명하고, 사망자의 가족 등에게 교부해야 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받은 관청에서는 사망증명서에 기록번호를 붙여, 연도와 그 번호순으로 편철한다. 여기에서도 연도별로 사망자의 마지막 성명 알파벳순으로 색인을 작성한다.

미국에서는 遺體(human remains)를 처분하기 이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에 대한 사망등록(death registration)이 의무화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8일 이내에 사망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의무자는 장의책임자(the funeral director) 또는 치료를 한 의사, 검시관이다. 사망기록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郡등록사무소에 가서 신청서에 청구자의 성명, 주소, 사망 연월일, 사자의 성명, 사망한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와 비용 9달러를 지불하면 사망증명서 등본을 발행받을 수 있다. 사망기록등본은 등록증명이 있는 이상 사법행정상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청절차에 있어서도 우선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사망증명서는 연금, 유족급여, 손해배상, 생명보험금, 유산관리나 상속에 관한 절차상 필요하다. 뉴욕주에서도 출생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위생국 인구동태 통계부에서 1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사망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3. 미국에서의 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가. 인구동태통계와 신분등록과의 관계

미국에서 신분등록은 본래 교회가 출생부, 세례부, 혼인부, 매장부로서 기록을 보관해 왔으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걸쳐서 인구동태통계를

목적으로 州가 행정적 등록이나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05년에 인구동태통계과(Bureau of Vital Statistics)가 설치되었고, 이때 이래로 모든 주에서 출생, 사망, 혼인등록 보고시스템이 채택되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인구동태에 대한 등록은 위생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州보건국이 인구동태 통계등록을 담당하며, 영구적으로 기록과 색인을 보관하고 있다.

나. 등록제도의 이용과 프라이버시보호

미국에서는 제3자가 마음대로 타인의 출생등록, 혼인등록, 사망증명을 흥미 본위로 검색·열람하는 일은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양자의 종전 출생증명서는 기록재판소의 명령을 얻지 않으면 본인이라고 하여도 열람을 할 수 없으며, 공개된 기록이라고 하여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부당한 목적의 조사나 탐색이 아니라는 선서서에 서명해야만 비로소 열람할 수 있거나 등본청구가 인정된다.

뉴욕주의 경우, 열람을 청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는 자에게는 혼인기록을 열람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알라바마주에서 인구동태통계나 기록등록제도가 개정되어, 등록·기재정정, 개시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는데, 州인구동태 통계국은 기록을 등록자 본인, 그 직계가족, 후견인, 대리인에게는 開示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자는 자기의 신분적 권리나 재산적 권리결정이나 보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조사를 위해서만이 허용된다.

다. 신분등록제도의 사회적 기능

미국에서는 국가가 구비하고 있는 신분등록제도가 개인식별 특정기능, 국적등록의 증명기능, 가족관계공시, 공증기능 등의 증명기능, 인구동태통계에서 기초자료로서의 통계기능 이외에는 가족관계나 상속인의 추적기능, 가족질서

조직·형성기능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관계의 공시기능·적법성 확인기능도 사건별 편철등록시스템으로 인적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혼이나 근친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지극히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인구이동이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출생증명서나 각종 신분증명서가 위조되는 등 전 미국적 규모로 정확한 개인특정 식별기능, 아이덴티 확인기능이 가능한 등록제도가 필요해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전 미국인 개인식별제도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라고 말해지고 있으며,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조세,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 공적부조, 실업보험, 크레딧 카드 사용 등 다양한 경우에 이용되고 있어서 신분증명으로서의 실질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V. 영국

1. 특징

영국의 신분등록의 큰 특징은,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출생등록부, 결혼등록부, 사망등록부 상호간의 색인기능이 없는 반면, 중앙등록제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출생, 혼인, 사망 등 전국의 어느 등록지에서 등록하든지 간에 신분등록이 런던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런던에는 general register office라는 중앙신분등록관청이 있어서 신분등록을 정리하고 보관하며, 지방의 등록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시, 감독, 혹은 임면권과 같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영국은 잉글랜드라고 하는 런던을 중심으로 한 지구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4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general register office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2개 지방에 대한 신분등록만을 다룬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전체적으로 440개의 district로 나뉘어져서, 여기에 각각 superintendent registrar이라고 하는 감독등록관이 있고, 이것은 다시 700개 이상의 serve-district로 나뉘어져 여기에 registrar를 두고 있다. 이들은 오직 주로 출생과 사망등록을 취급한다. superintendent registrar는 registrar들을 관리하며, 또한 결혼관계등록을 한다. 이 district는 행정구획과는 달리, county, county borough, London borough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신분등록부

가. 출생등록부

사람이 출생한 때에는 출생일로부터 42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의무자 본인이 등록관에게 가서 등록하며, 등록관은 신고인에게 질문·답변을 주고받아

서 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출생신고의무자의 제1순위는 모와 부이다. 그리고 2순위는 출생한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3순위는 출생에 입회를 한 사람이다.

우선 제1차적으로 출생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Medical officer of the Area Health Authority, 즉, 보건소와 같은 곳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생에 입회를 한 자가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은 의사가 신고를 한다. 또한, 수태 후 28주가 경과된 후의 출생아가 사산(死産)한 경우에도 사산(stillbirth)등록을 하여야만 된다. 이와 같이 관할 serve-district에서 일어난 출생이나 사산 등 사망등록이 기재된 등록부는 등록관이 2통을 작성하여 3개월마다 이를 superintendent registrar 즉, 직속 감독등록관에게 송부하고, 그 중 하나는 런던의 general register office로 각 송부하게 된다.

나. 혼인등록부

혼인은 원칙적으로 superintendent registrar가 있는 곳에 출석하여야 한다. 영국에서의 결혼방식은 복잡하나 대체로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회혼인으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목사가 등록을 하여 교회가 그 사본을 register office에 송부하며 이 경우에는 superintendent registrar의 관여 없이 교회가 등록관의 기능을 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민사혼인으로 법률상의 혼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며 register office에서 registrar에 의해서 거행된다. 이 민사혼인은 다른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취하는 제도이다.

셋째, registrar가 교회에 가서 등록하는 형태로, 교회에서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혼인등록은 등록관이 하는 형태의 결혼식이다.

넷째, 교회가 특별한 등록을 할 권한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혼인을 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다. 사망등록부

사망의 경우에도 출생과 마찬가지로 신고의무자가 결정되어 있으며, 우선 친족(relative)이 사망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사체처리 책임자 또는 그 사체가 발견된 장소의 책임자, 임종을 지켜본 자, 그리고 그 죽은 집에 있던 동거자와 같은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분등록부의 공개

영국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신분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은 일반공중에게 공개되고 있는 색인을 위한 장소를 두고 있다. 즉 그 장소에서 3개월마다 지방에서 송부되어 온 3가지 종류의 신분등록을, 각각 출생·사망·혼인 사항별로 알파벳 순서로 그 사람의 이름을 정리하여, 이를 색인자료로 하고 있다. 색인자료 속에는 이름과 그 사항이 일어난 연월일과 일어난 장소, 가령 출생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출생아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제 몇 권 몇 페이지에 그 기재가 있다는, 등록부가 있는 장소, 즉, 신분등록부, 출생부, 혼인부 등 그 등록이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 출생, 혼인등록부 사이에 상호색인기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결혼상대방이 기혼자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 목적 인물과 그 사람의 결혼사실에 대한 등록 사이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출생등록의 경우에는 보통은 본인의 이름 이외에, 출생 연월일, 혹은 장소, 그리고 부의 이름, 모의 이름 같은 것이 기재되게 되나, 그 전부에 대한 등본은 물론, 부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이 general register office에서는 이러한 등록기록은 모두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명서나 등본을 작성한다.

마. 외국인의 신분등록

영국의 중앙등록제도는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부 하나의 신분등록시스

템에 입력·관리된다. 혼인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영사혼을 허용하면서, 또한 본국인이 하는 방식대로 registrar(등록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등록부는 영구히 보존되므로 언제든지 확인 및 공증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VI. 프랑스

1. 역사

가. 교회에 의한 신분의 기록

동양국가의 신분등록제도가 민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가의 조세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의 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면, 유럽제국의 신분등록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서양의 사회가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달하였기 때문에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의 신분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 있어서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을 중심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전통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신분등록제도의 기원은 물론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는 특정집단에 관한 기록이었으며 비교적 전국민을 상대로 신분등록이 시행된 것은 교회에 의한 신분의 기록이 행하여진 시기부터이다.

유럽 근세의 신분등록제도는 기독교 교회의 교회부에서 유래한다. 기독교 유포 초기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사망시기를 적은 사자명부(死者名簿) 이외에는 신자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는 반기독교적 박해에 이용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 뒤에, 각 교구에서 소속신자의 이름과 그 세례날짜를 기록하기 시작했지만, 교회부가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인 교회법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은 15세기 말경이다. 이 시기는 근세국가의 발족시기이고, 카톨릭이 파급되던 시기이다.

독일에서는 16세기에 처음으로 교회부를 채용했다. 각 지역에 전파된 교회부를 신교교회에서 책임지고 유포했다. 이러한 교회부는 독일에서는 주로 신교교회가 종파 간의 세력을 다투는 수단으로서 이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

파분쟁, 즉 한 종파가 다른 종파를 탄압하는 배경에 근세초기 절대주의국가가 있었고, 특정한 종파를 도와 다른 종파를 억압하여 국가로 권력집중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교회부제도의 성립에는 국가가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교회부는 세례부, 혼인부, 매장부로 구성되고, 각각 그 교구에서 이루어진 세례·혼인·매장에 대한 기록을 보존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세례, 혼인, 매장에 대한 기록이 각각 다른 교구에 존재할 때도 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부에서 사람의 신분관계의 개념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세례부에는 세례날짜만이, 매장부에는 매장날짜만을 기록하고, 출생이나 사망일자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부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불완전했다. 그 밖에,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는 교회부에 상당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다. 그런데 차차 세례부에는 출생날짜를, 매장부에는 사망날짜를 병기하는 습관이 생기고, 교회에 소속하지 않은 자에게도 신분기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발전에 따라 교회부는 친족법적 관계 내지 그 변동을 공증한다는 민사적 목적에도 기여했지만, 한 종파가 다른 종파를 탄압하고, 국가에서 보면 국교 보호, 이단 금지라는 경찰 목적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고, 특히 매장부는 변사자를 은밀하게 매장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 형사경찰 목적도 수행했다.

결국, 교회에 의한 신분의 기록은, 신교도의 탄압이라는 교회의 목적을 위한 것과 국가는 교회에 신분등록의 권한을 인정하여 주고 이를 통한 간접적인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로 신분등록제도에 의한 국민통제의 수단은 서양과 동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양에서는 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서양에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 국가에 의한 신분의 기록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1778년 9월 20일 칙령으로 신교도의 출생, 혼인, 사망의 기록을 국가가 행할 것을 제정하여 국가에 의한 신분등록제도를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신분등록에 관한 교회의 권한을 탈환하였다.

그 후 1789년 프랑스혁명에 의하여 칙령시행 이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분등록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교회로부터 탈환하여 전국민에 대한 신분등록제도를 국가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민법은 1804년에 신분증서(l'acte d'état civil)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것이 주로 민사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프랑스 민법이 19세기 초에 서부와 서남부독일에 영향을 미쳐, 이 지역은 국가가 신분등록제도를 실시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19세기 후반까지 종래 교회부 제도가 존속하고, 다만 무교회파인 자나 유대인을 위해서만 국가가 신분등록을 기록했다.

2. 편제방식

프랑스에서 신분등록관련 규정은 민법 제1편 제2장 신분증서(l'acte d'état civil)로서 제34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조문이다. 프랑스의 신분증서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이라는 세 가지 사항별 신분증서제도이며, 사건별 편제방식이다. 즉, 출생, 혼인, 사망이라는 세 가지 사항별 신분증서를 낱짜순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프랑스 신분등록제도가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한 것은 교회부에서 유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혁명은 교회의 신분등록권을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 대한 신분기록을 국가가 했다. 프랑스 민법은 그 제1편 제2장에 신분증서(l'acte d'état civil)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취지를 민사적 목적에 기여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법상 신분증서제도는 그 사항을 출생, 사망, 혼인에만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충분했을 뿐 아니라, 출생, 사망, 혼인을 각각 발생지역의 신분등록공무원이 기록하고, 각 증서를 그 지역에서 보관하여

동일인의 출생, 사망, 혼인에 관한 증서가 각각 다른 지역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증서 간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었기 때문에 동일인의 신분관계를 증서 하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점은 시간이 지나고, 거주 이전이 빈번해짐에 따라 분명해져, 19세기 이래 수차 법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수정법은 기록사항을 출생, 사망, 혼인 이외의 여러 사항으로 확장하면서, 특정인에 관한 여러 증서 간의 연결을 시도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신분등록공무원이 접수한 사항을 증서에 기록하는 방법뿐 아니라, 다른 관청에서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신분증서에 전기하는 난외부기방법도 채용했다. 난외부기제도에 따라 사람의 각종 신분기록이 그 자의 출생증서를 중심으로 정리되면서, 출생증서의 기록란 외에 기록한 부기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신분증서를 찾음으로써, 사람의 신분관계를 대략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에는 이러한 신분증서 외에, 1884년 법에서 정한 '가족대장'이 있다. 가족대장은 혼인할 때 호적공무원이 부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부부의 성명, 자녀의 출생,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을 기록한 것이다. 현실사회에서는 이 가족대장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프랑스의 신분증서제도는 혁명 전 관행에 따라 하고 있었던 교회부의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용하고 있었더라도, 국가가 신분등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하여 그 실현의 일환으로서 민사신분관리를 교회에서 되찾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호적법이 민법의 친족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가족법상 하나의 영역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신분증서는 친족법과 직접 대응관계가 없다.

현재 프랑스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용한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3종류의 신분증서제도가 신분등록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신분증서는 신분등록공무원(officier de l'état civil)이 작성한다. 신분등록공무원은 시·읍·

면장과 조역이다. 시·읍·촌장은 시·읍·면의회의원, 시청직원 등에게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민법 제64조, 제79조 제2항, 제4항). 신분등록공무원은 ① 출생을 확인하고, 출생증서를 작성한다(민법 제62조, 제334조), ② 당사자가 혼인법정요건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혼례를 올리고, 혼인증서를 작성한다(민법 제63조, 제75조 제165조), ③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증서를 작성한다(민법 제75조), ④ 신분등기부를 유지한다(민법 제49조), ⑤ 신분증서의 등본과 초본을 교부한다. ⑥ 혼인동의서를 수리한다(민법 제73조). 신분등록공무원은 출석한 자가 진술한 사항만을 기록할 수 있다(민법 제35조).

이렇게 작성한 신분증서는 2통이며, 1통은 시·읍·면장에게, 1통은 대법원 서기과에 기탁한다. 그러나 신분등록부 자체 편성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각 시·읍·면장의 장은 그 선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3부로 나눈 단일 신분등록부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신분증서마다 각각 신분등록부를 작성할 수도 있다. 지방의 코뮌(commune)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신분등록부를 출생, 혼인, 사망의 3부로 나누어 사용하고, 주요한 코뮌에서는 출생, 혼인, 사망의 각각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분증서를 쉽게 검색하기 위해 코뮌에서 매년 알파벳순 색인을 작성한다. 나아가, 이 표를 기준으로 10년간 색인을 작성한다.

신분증서원본은 신분등록공무원이 자신의 확인을 바탕으로 기록한 사항, 예컨대 혼인일시 등은 소송에서 '허위기록(inscription de faux)'으로 확정할 때까지는 증명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303-316조). 그러나, 법률은 신분등록공무원의 확인을 바탕으로 하는 기록사항에만 증명력을 준다. 그런데 신분증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 밖의 사항이다. 예컨대, 출생증서에서 보면, 생년월일시, 부모의 성명 등이다. 이러한 사항은 신분등록공무원이 그 진실을 확인할 권한을 없으므로, 증명력은 주지 않는다. 요컨대, 신분등록공무원이 확인할 권한을 가진 사항 이외에는 소송에서 이른바 '허위기록'으로 판단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해관계인은 반대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사실을 뒤집을 수 있다. 그 밖에, 신분증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

하며, 이들도 원본과 같은 증명력을 가진다.

3. 신분등록부

가. 출생증서(acte de naissance)

(1) 작성절차

사람의 최초 신분취득은 출생이다. 속지주의 국적제도를 채용한 프랑스에서는 영토 내에서 발생한 출생은 모두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한다(민법 제55조 제1항). 우리 호적에서는 신고인이 기입한 출생신고를 호적공무원이 호적에 기재하는데 비하여, 프랑스의 출생증서는 신고인이 자녀가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신분등록공무원이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출생신고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당사자에게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빈사상태에 있을 경우에는(혼인의 경우 이외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가서 증서를 수리할 수가 있다. 특히 병원이나 산원(産院)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등록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등록공무원은 출산장소에 행정관청의 출생등록부나 특별등록부를 가지고 그 장소로 가서, 분만에 입회한 의사 혹은 조산부가 작성한 증명서로 신생아의 출생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신분등록공무원의 이러한 기동성은 프랑스의 출생신고와 우리의 출생신고와의 다른 점이다.

한편, 증명서양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시·읍·면장은 그 구역 내의 의사와 조산부에게 인쇄한 용지를 교부하고 있다. 자녀가 출생한 때는 의사나 조산부가 그 용지에 소정사항을 적어서, 신고의무자에게 교부한다.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이 때 의사에 의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나, 이것을 법적인 의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족하다. 나폴레옹 민법전 제55조에는 신생아를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신생아의 건강에 해가 되는데다가, 이로 인하여 신생아의 모로 기재된 자가 진짜 모라는 사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된 적은 없고, 파리 등 몇 군데 대도시에서는 시에 위탁된 의사가 출생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19년 11월 10일 법률에 의해 제55조의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결국, 이 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진술로도 충분하다.

출산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지역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父가 출생을 신고한다(민법 제55조 제1항). 부가 부재중이거나 질병이나 사망, 혹은 자녀가 혼외자라는 등의 이유로 父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조산부, 또는 출산에 입회를 한 기타의 자가 출산을 신고하고, 母가 주소 이외의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한 집의 거주자가 출산을 신고한다(민법 제56조). 3일 이내라고 하는 신고기간은 우리 신분등록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월과 비교하여 대단히 짧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보다 늦어진 신고는 출생지관할법원(출생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신청인의 주소지관할법원)의 판결이 없이는 신분등록공무원이 기재할 수 없다(민법 제55조 제2항).

신분등록공무원은 출생증서를 즉시 작성하며, 신고인에게 증서를 읽어 준 다음 증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직접 읽어보도록 권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밟았음을 증서상에 기록한 후(민법 제38조), 신분등록공무원과 신고인이 서명을 하되, 서명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한다(민법 제39조).

(2) 기록사항

적출자일 때 기록사항은 ① 생년월일시, 출생지, ② 자녀의 성별과 성명, ③ 부모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④ 필요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이다(민법 제57조). 혼인의 자녀일 때는 그 부모에 관한 사항을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신분등록공무원은 이에 관한 사항을 신분등록부에 기록할 수도 없다. 부모의 성명을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즉 민법 제57조 제1항 후단에서 “자녀의 부모 또는 그 일방을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 이 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부모 불상 등으로 기입하는 일은 금지되고 있다.

한편, 혼인의 자녀의 출생증서에 모(母)의 서명을 적은 것만으로는 모의 인지로 보지 않는다. 모가 인지하려 할 때는 신분등록공무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증서와 연관시키기 위하여 출생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난외에 부기한다. 혼인증서(부부 각각의 출생증서 난외에 혼인사실과 배우자의 이름을 부기, 민법 제76조), 사망증서(민법 제79조), 혼인의 자녀의 인지증서(민법 제62조 제1항), 부모의 혼인 후 인지나 법원결정을 바탕으로 혼인의 자녀의 인지(민법 제331조), 단순양자입양선고나 철회판결(민법 제362조, 제370조의 1), 완전양자입양선고판결(민법 제354조), 이혼, 별거판결(부부 각각의 출생증서, 민법 제251조, 제308조), 이혼판결일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바탕으로 별거중 부부의 이해를 증명하는 공정증서(민법 제311조)를 부기한다. 완전양자입양일 때는, 원 출생증서를 무효로 하고, 완전양자를 위한 새로운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새 출생증서에는 자녀의 생년월일, 출생지, 양친의 주소·직업을 기록할 뿐이며, 원래 친자관계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출생증서는 이 난외부기 방법에 따라 출생뿐만 아니라 인지, 준정, 입양, 혼인, 별거, 이혼, 사망 등, 일련의 신분변동을 기록하여, 개인별 인적편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3) 허위 출생신고에 대한 보호

(가) 민법 및 형법의 규정

허위출생신고에 대한 민법 및 형법상의 보호에 대하여 살펴 보면, 출생증서라고 하는 문서 작성자는 어디까지나 신분등록공무원이다. 따라서, 우선 작성자인 신분등록공무원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 프랑스민법은 50조에서 “신분등록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민법 제34조에서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법원에 소추되며, 2,000프랑에서 20,000프랑의 특별민사처벌을 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1조에서 “모든 신분등록부 보관인은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자에 대해서 변경을 가했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배상책임은 민법 제50조, 제51조의 특별 배상책임 규정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제1382조, 제1383조의 일반규정도 적용이 된다. 형법에서 신분등록공무원의 부정행위는 공문서 위조죄(프랑스형법 제145조, 제148조, 제163조, 제164조), 자녀의 민사신분을 위협하게 한 죄(제345조) 등에 해당된다. 프랑스형법시행령 제40조 제5호는 신분등록공무원이 혼인에 대해서 필요한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나 금혼기간을 위반한 혼인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도 10일에서 1개월의 금고형과 2,500프랑에서 5,000프랑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3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프랑스 형법시행령 제40조 제6호에 의해 10일에서 1개월의 금고형과 2,500프랑에서 5,000프랑의 벌금이 과해진다.

父는 제1순위의 신고의무자이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父가 있다면 父만이 이 죄에 해당된다. 父가 없는 경우, 父 이외의 신고의무자 중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은 같은 순위로 이 죄에 해당된다. 다만, 자신이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을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 母는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죄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 형사처벌은 우리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만원 이하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훨씬 엄격하다.

신고의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프랑스형법 제147조의 공문서위조죄, 제345조 자녀의 민사신분을 위협하게 한 죄, 제405조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나) 프랑스 형법 제345조 ‘자녀의 민사신분을 위협하게 하는 죄’

이는 우리 형법에는 없는 죄인데, 프랑스의 민사신분이라는 개념과 그 보호를 알아볼 수 있는 조문이다. 프랑스 형법 제345조에는 “子の 유괴(enlèvement), 은닉(recélé), 출생인멸(suppression), 바꿔치기(substitution), 출산을 하지 않은 여자의 출산위증(supposition)을 범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자가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1

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자가 생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6월 이상 2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구시대(ancien-régime, 앙시앙레짐)에는 출산위증, 즉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자라고 하는 일과 출생인멸 즉, 유괴나 은닉과 같은 방법으로子を 숨겨버리는 일을 구별하여 처벌하였다. 이와 같이 출산위증이나 출생인멸은 위법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과 관련되어 부정수단으로 자주 이루어졌다. 1791년 제정된 형법은 이를 단순화하여 1개의 조문으로 처벌하려고 하였다. 현행 형법 제345조에 해당되는 1791년 형법 제2편 제2장 제1절 32조는 “고의로 민사신분에 대한 증거를 파괴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입법자는 이러한 표현으로 출산위증 등을 처벌하려고 하였던 것이나, 판례는 이 조문을 신분증서의 물리적 파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출산위증이나 출생인멸, 나아가 임신은닉조차도 이 본문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1810년의 형법에서는 子の 민사신분 파괴를 가져오는 5종류의 행위를 열거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현행 제345조 제1항이며, 제2항과 제3항은 1863년 5월 13일 법률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 본 조문의 해석에 대해서는 학설에 다름이 있으며, 판례도 장기간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 쟁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가 子の 인격을 보호법적으로 할 것인지, 子の 민사신분을 보호법적으로 할 것인지, 나아가 이 모두를 보호법적으로 할 것인지 라고 하는 점이다.

학설, 판례의 변천이 있었지만, 제345조가 포함되는 형법 제6절의 항목에는 “子の 민사신분에 대한 증거를 방해 또는 파괴하려고 하는 죄”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 또한 1791년 형법 이래의 입법경위에서 보면 子の 민사신분을 보호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에는 민사신분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 거의 일치되고 있다.

민사신분에 위해를 미치는 일은 민법이 친자관계 결정요건으로 하고 있는 2가지 요소, 즉, 출생증서 내지는 신분점유를 해치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4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정한 민사신분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된다.

유괴(enlèvement)란子を 납치하여 가족과 떨어뜨리고 이를 알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여, 그子を 위한 신분을 꾸며내는 것이다. 진짜 친자관계에 관한 증거를 파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신분에 대한 증거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345조가 아니라, 폭력 등에 의한 유괴죄에 관한 형법 제354조가 적용된다. 은닉(recélé)이란 납치되어온子を 숨기거나 맡아 두는 일로서, 마찬가지로 허위신분을子에게 부여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감각으로 보면 출생증서가 위조되지 않은 유괴나 은닉이 민사신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열거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프랑스민법은 출생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점유에 의해 친자관계를 입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민사신분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당혹감은 신분점유라고 하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탓만은 아닌 듯이 생각된다. 즉, 신분등록과 신분증서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별로 편성되고 신분등록 사이에서 상호 연결되는 신분등록제도에서는 개인은 신분등록이 구현하는 친족관계의 그물 어딘가에 위치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개인이 모습을 감추었다거나 다른 장소에서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그물 속에서의 위치는 쉽게 전복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신분증서에서 개인은 신분등록 체계에 있어서도 독립된 개인으로서 존재하며, 양친의 이름이라는 정보가 그 개인에게 결부되어,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므로, 유괴나 은닉이 이를 쉽게 전복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허위출생신고와 관련될 수 있는 범행유형은 '바꿔치기(substitution)',나 '출산위증(supposition)'이다.子の 바꿔치기란 어떤子を 여타子와 바꾸는 일이며, 자주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 출생증서 위조가 동반하고, 이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벌만이 가해진다. 고의에 의한 바꿔치기는 유모가 자신의子와 위탁받은 귀족의子를 바꾸는 사례가 있으며, 과실에 의한 것으로는 産院에

서 바뀌는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출산위증'은 모친이 아닌 여성이 모친이 되는 일로서, 한 사람만의子가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바꿔치기와는 다르지만,子로부터 진실한 친자관계를 박탈하고, 자신의 가정인 아닌 가정에 귀속시키는 결과는 바꿔치기와 동일하다.

우리 나라에서 종래 논의되어온 허위출생신고의 유형은 출산위증에 해당될 것이다. 출산위증은 허위출생신고에 의한 것과 허위의 신분점유 부여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판례에 나타난 사안은 허위출생신고에 의한 출산위증만이며, 사실상의 養子에 대해서 허위출생신고를 한 다음, 기르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출산위증의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의 선결에 따르지만, 1972년 법에서 입법된 민법 제322조의1에 따라 신분점유와 출생증서가 일치되고 있다고 하여도, 민사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사용하여 그 친자관계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허위의 신분점유 부여에 의한 출산위증은 진정한 출생증서가 있고 진실한 신분이 파괴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즉, 출생증서를 위조하지 않고, 태어났을 때부터 양자를 키운 경우에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그子の 이전 신분을 파괴하였거나, 올바른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일을 방해하여 진짜 가족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제345조가 적용된다.

'출생인멸(suppression)'은 민사신분에 해를 가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이상의 4가지 행위와는 다르다. 살아서 태어난子가 모습을 감췄다는 사실만이 확실하고 사체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유괴되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사고사하였는지, 몰래 매장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즉 영아살인이나 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이다. 출생인멸은 민사신분에 대한 가해를 요구하지 않고, 친자관계 선결에 따를 필요가 없다.

제345조의 고의내용으로는 민사신분이 위협하게 되었거나 상실되었거나 하였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며, 또한 이것이 유일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주요 동기는 본래의 상속인을 배제시키는 일이나, 태어났을 때부터 양자를 의도하는 일이나, 혼외 성관계를 감춘 일이라고 하여도 지장이 없다. 또한, 범죄자는 어디까지나 이들 행위를 한 자로,子是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인 子의 연령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지만, 민사 신분을 위협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이전의 어린 연령의 子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허위의 신분점유를 꾸미는 단계가 되면 민사적으로는 그 子 자신도 그 신분점유의 공동작성자가 되지만, 형사적으로는 물론 공범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피해자이다. 자기 자신의 민사 신분을 거짓으로 꾸미는 자는 사기죄나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일은 있어도, 이 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3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죄이다. 이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주저한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출생신고로 사실상의 양자를 얻는 일은 프랑스는 우리 나라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출산위증 사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 비밀리에 하여 처벌을 피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출생신고시에 의사의 출산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는 프랑스법 하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출생신고를 둘러싼 법규의 규제 내용을 개관해 보면, 신분등록의 출생신고와 출생증서 신고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출생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태만이라는 경범죄가 신고의무자에게 가해지고, 형법 제345조의 중벌을 고려해 보면, 프랑스에서는 子의 출생을 즉시 국가에 신고하는 것이 공공질서에 맞는다는 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의무자의 구성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신분등록과는 이러한 점에서 이질성을 느끼게 된다. 의사는 프랑스 법에서는 경범죄 구성에 있어서 父의 다음 순위에 신고 의무가 가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등록법에서는 부모, 호주, 동거친족 다

음 순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신분등록법은 모에게 제1차적인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母는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지 않다.

우리과 프랑스 사이의 허위출생신고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혼외자의 경우에 양친의 익명성을 인정하고 있는 출생증서 구조도 큰 이유라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출생신고에 대한 법질서 위치부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子의 출생은 그 子 본인에게 있어서의 사건 혹은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의 사건으로서 취급되는 측면이 강한데 비하여, 우리 나라에서 子의 출생은 적어도 출생시점에서는 오히려 가족에게 있어서의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4) 친자관계 결정에 있어서 대심법원(對審法院)의 전속관할

프랑스법에서는 친자관계에 관한 형사절차 발동에 있어서 민법에 중대한 절차상의 제한이 있다. 1972년 개정법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 제311조의5에 “친자관계에 관한 신분소송은 민사 대심법원(우리 나라의 지방법원과 비슷하며 주로 1심을 관할함)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법 제311조의6에 “개인의 친자관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친자관계 결정에 대해서 기판력이 있는 판결 이후가 아니면 공소에 대해서 판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심법원의 전속관할의 의미는, 소법원이나 상사법원, 노동법원 등이 친자관계에 관한 소송을 수리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법원에서 주된 청구에 대해서 항변으로서 친자관계 문제가 주장되는 경우에도 그 법원은 심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하며, “소권 재판관은 항변 재판관이다”는 법 격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민사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에서는 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민사재판에 대해서 기판력을 지닌다는 원칙이 있다. 형사재판관은 민사재판관이 갖고 있지 않는 조사입증수단을 지니기 때문에, 더 진실에 합치될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은 공공질서와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므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민

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자관계에 대한 규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도 중대한 예외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속관할과 형사에 대한 민사 선결규정의 입법이유로는, 첫째 민법은 친자관계 입증에 대해서 증거법칙을 설치하고 있지만, 형사재판을 경유함으로써 민법의 증거법칙을 탈법하려고 하는 행위를 봉쇄하고, 둘째 민사신분에 관한 범죄는 공공질서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한 일이지는 않지만,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것은子和 가족이므로, 가족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친자관계를 침해하는 범죄란, 형법 제145조 이하 공문서 위조죄, 형법 제439조의 신분등록부 파손죄, 형법 제345조 子の 민사신분을 위협하게 한 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친자관계가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친자관계가 형의 가장요건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도 선결대상은 되지 않으며, 독립된 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사신분을 인멸하려는 동기에 의거하지 않는 영아살인이나 존속살인, 형법 제380조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子の 유기나 유괴, 출산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지 않는 신고태만 등의 처벌에는 민사신분의 민사재판에 의한 선결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이 민사의 친자관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이들 규정의 내용은 우리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공소제기가 있을 경우에, 민사재판에서 친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기다려 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등의 사태는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다. 프랑스의 법체계에서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신분소송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5) 출생증서의 등본과 초본

출생증서를 바탕으로 그 등본과 초본을 발행한다.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성년에 달했거나, 친권을 해제당한 본인, 그 부모, 자녀, 배우자, 법정대리인, 검사이다. 그 밖에 자가 등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생증서 초본은 모든 청구자에게 발행한다. 초본에 기록하는 사항은 생년월일시, 출생지, 성명, 성별뿐이다. 다만,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혼인지, 배우자의 성(姓)도 기록한다.

나. 혼인증서(acte de mariage)

(1) 공고

프랑스에서 혼인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혼인한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는 혼인장애를 발견하고, 그 혼인에 이의할 기회를 주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분등록공무원은 혼인당사자가 혼인을 목적으로 진단받았음을 증명하는, 적어도 2개월 내에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한 뒤에만 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3조 제2항), 신분등록공무원은 시읍면의 사무소 입구에 10일간 게시하되, 혼인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으며(민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1년 안에 혼인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만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65조).

(2) 이의

혼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나 그의 대리인은 혼인이의증서의 원본과 사본에 서명을 하고 혼인당사자나 그의 주소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발송하고, 신분등록공무원은 원본에 사증을 한다(민법 제66조). 신분등록공무원은 지체없이 이의에 관한 사항을 혼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후 이의가 취소되어 이의취소판결이나 취소증서가 송달되어 올 경우 이의에 관한 기록란 여백에 취소된 사실을 기록한다(민법 제67조). 따라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

분등록공무원이 취소사실을 기록하기 전에는 혼인을 거행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프랑의 민사벌금과 손해배상에 처해 지게 된다(민법 제68조). 공고를 여러 시·읍·면에서 했을 때는 각 시읍면 신분등록공무원 은 혼인을 거행할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이 없다는 확인서를 지체없이 발송해야 한다(민법 제69조).

(3) 제출서류

공고에 따라 혼인장애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했을 때는, 혼인신고할 수 있다. 그 때, 그 증명서에 더하여, 민법이 정하는 다른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생증서등본, 미성년자일 때는 혼인 동의권자의 동의서류, 재혼일 때는 전혼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고, 이러한 증서는 프랑스 안에서 발급한 것은 3개월, 식민지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것은 6개월 내에 발급한 것이라야 한다(민법 제70조). 한편, 혼인당사자 중 출생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출생지나 주소지의 법원 판사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민법 제71조).

(4) 혼인예식

이와 같은 서류에 따라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당사자 한쪽이 주소가 있는 시나 법률로 정한 공고일 현재 적어도 1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거소의 시·읍·면 관청에서 신분등록공무원이 공개로 예식을 거행한다(민법 제74조). 예식을 거행할 때는 당사자의 친족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2인 이상 4인 이하의 증인이 참여해야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신분등록공무원은 각 당사자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당사자가 혼인으로 결합하였음을 법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즉석에서 혼인증서를 작성·발급한다(민법 제75조 제6항).

(5) 기록사항

혼인증서에 적은 사항은 부부의 성명, 직업, 연령,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와 거소, 부모의 성명, 직업과 주소, 요청이 있으면 부모나 조부모의 동의와 가족회의 동의, 부부 각각의 전배우자의 성명, 혼인합의와 신분등록공무원의

혼인신고, 증인의 성명·직업·주소와 그 성년자격, 부부재산계약 유무 등이다(법 제76조).

혼인증서 난외에는 혼인의 무효·취소판결(법 제67조), 별거나 이혼판결(법 제351조, 제308조), 별거부부의 화해증명공정증서(법 제311조), 재산분리판결(법 제1445조, 제1580조), 관리수익권박탈판결(법 제1426조), 관리수익권박탈판결(법 제1426조), 1965년 7월 13일의 법률(부부재산제의 개혁을 정하는 법률) 시행 전에 혼인한 부부가 공증인 앞에서 한 공동진술(법 제11조) 등을 기록한다. 혼인증서 난외에 부기하는 사항은 혼인의 무효 및 취소, 이혼, 별거를 제외하면 부부재산관계에 속한다.

(6) 혼인증서의 등본과 초본

혼인증서를 바탕으로 그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한다. 혼인증서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출생증서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같다. 그 밖의 다른 자는 혼인증서초본만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증서초본의 기록사항은 부부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나 거소, 부부재산계약의 존부, 그 계약했다면 그 날짜, 그것을 접수한 공증인의 성명과 주소이다.

다. 사망증서(acte de décès)

(1) 작성기관

출생으로 시작한 신분과 그 변동은 사망으로 끝난다. 사망증서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사망자에 관하여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가진 자의 신고에 따라 사망한 시·읍·면의 신분등록공무원이 작성한다(민법 제78조).

(2) 기록사항

사망증서 기록사항은 사망일시와 사망지,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 직업과 주소, 그 부모의 성명·직업·주소, 사망자가 혼인, 사별, 이혼상태였을 때는 배우자의 성명, 신고인의 성명·연령·직업·주소·필요한 때는 사망자와 관계(존수) (민법 제79조 제1항)이다.

이러한 사항은, 되도록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정한다(민법 제79조 제2항). 예컨대, 사망원인이 범죄일 때는, 살해된 처소, 시체이송, 시체발견처소를 기록한다. 신분등록공무원은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며 제출한 신고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증서를 작성한다(민법 제80조 제4항).

사망증서 난외에는 사자가 '프랑스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상 결정(art. L492 Code des pensions militaires d'invalidité)을 부기한다.

한편, 사망에 관한 사항은 사망자의 출생증서 난외에 부기한다(민법 제79조 제3항).

(3) 사망증서등본

사망증서를 바탕으로 사망증서등본을 발급한다. 사망자가 주소를 가진 시읍면 밖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증서를 작성한 신분등록공무원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사망증서 등본을 최종 주거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발송하고 이 등본을 신분등록부에 등록한다(민법 제80조 제1항).

사망증서의 공개문제는 출생·혼인증서와 사정이 다르다. 출생·혼인증서는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여 타인에게는 초본만을 발급한다. 그러나 사망증서는 그 제한이 없어 등본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사망증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사망자의 프라이버시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민사상 목적 이외에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라. 가족대장(Livret de famille)

프랑스에서는 신분증서 외에 신분을 공증하는 것으로서 가족대장이 있다. 전통적으로 증명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신분증서이고, 그 뒤 그 등본과 초본에도 같은 증명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절차 외에서는 시장(市長)이 교부한 다양한 서류를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서류가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 가족대장의 작성과 교부에 관한 규정을 1953년과 1954년에 마련하여, 1974년 5월 15일 현재 제도로써 확립했다.

이처럼, 제도화된 가족대장이 다른 신분증서와 다른 것은 국가가 사람의 신분을 등기·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족대장은 가족대장에 기록된 당사자가 그 신분을 공공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신분증서도 사람의 신분을 공시·공증할 뿐 아니라, 공권력과 관계에서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가족대장은 그 사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기록사항

가족대장의 기록사항은 신분증서에 기록한 범위 내 사항이며, 신분증서의 내용, 기능을 넘을 수 없다. 신분증서가 공증하는 사항을 공증할 뿐이다.

가족대장은 혼인 예식 뒤에 신분등록공무원이 부부에게 발행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대장은 하나만 작성한다. 그것은 혼인증서의 기록사항 중에서 일부를 발췌기록하여, 그 뒤 혼인증서초본으로서 사용한다. 뒷날, 자녀가 출생하면 그 출생증서초본을 바탕으로 자녀의 출생사항을 기록하고, 자녀의 출생증서로서도 사용한다. 가족대장에 기록된 자는 친생자에 한정하지 않으며, 양자도 기록한다. 한편, 이혼한 경우에는 가족대장의 첫째 쪽에 이혼 후 2번째 대장을 교부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다.

가족대장은, 또한 혼인과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립된 혼인의 자녀가 있을 때도 부친이나 모친의 청구에 따라 발급한다. 혼인의 자녀의 부친과 모친은 공동으로 공통대장(livret commun)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가족대장은 자녀의 출생증서로서 사용한다. 단독입양일 때도 가족대장을 발급하며, 그것은 양부모가 관리한다. 나아가, 가족대장에는 혼인, 출생, 그밖에 사망사항도 기록한다. 그리고 그것은 부부의 사망증서, 성년 전에 사망한 자녀의 사망증서초본으로서 사용한다.

이처럼, 가족대장은 부부의 혼인증서초본, 자녀의 출생증서초본, 부부와 성년 전에 사망한 자녀의 사망증서초본과 똑같은 증명력을 가지므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신분등록지의 시·읍·면 관청에 증서발급을 청구해야 하는 수고에서 시민을 해방한다. 가족대장은 공적서비스를 받을

때, 예컨대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신분증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 각각 그 신분증서를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신분카드(fiche d'état civil)

행정절차 등에서 가족대장은 신분카드로서, 간편하고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신분카드를 정한 것은 가족대장과 같은 1953년의 행정부령이다. 원칙적으로 신분카드는 어떠한 시에서도, 신분증서나 가족대장을 제시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를 대신한다. 이에 따라, 신분증서가 있는 지역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증서초본을 청구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다만, 신분카드의 기록사항은 공증력은 없으며, 단순히 신분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제시한 신분증서나 가족대장의 기록사항과 동일성을 보증하는데 그친다.

Ⅶ. 독일

1. 역사, 관계법률

가. 역사

19세기 후반에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면서, 반기독교적 경향과 어울려 국가가 실시하는 통일적인 호적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1874년에 프랑스 호적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1875년에는 전 독일에 통일적인 호적법인 '신분공증과 혼인에 관한 제국법률'(Reichsgesetz über Beurkundung des Personenstandes und eheschließung vom 8. Febr.1875(RPstG))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교회부제도를 그대로 계수하여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와 같이 출생·사망·혼인 각각의 신분등록부에 기재·작성하고, 이는 각각 신분공무원이 관할구역 내의 출생·사망·혼인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할구역에 보관하고 1부는 감독관청에 송부하여 보관한다. 한편, 사람의 신분관계 전체를 대략이나마 파악하기 위해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했다.

또한, 독일의 많은 란트에서는 혼인할 때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관행상 교부한 특정양식으로 된 대장이 있었는데, 이를 가계대장 또는 가족대장이라 한다. 신분공무원은 이 대장에 혼인당사자, 혼인일시, 혼인당사자의 부모 등을 기록하고, 이것을 부부에게 교부했다. 그 후, 자녀출생과 그 사망이나 혼인, 부부의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이 생길 때마다 신분공무원이 그 사실을 가족대장에 기록했다. 가족대장은 풍습에 불과하였고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가족관계를 개관하는데 편리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었으며, 사람들은 신분기록부등본의 일종으로 생각했다. 신분법이 가진 결합이 인정되면서, 법도 이 가족대장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어 1924년 신분법을 일부 개정하여 가족대장이 특정한 요건을 갖춘 때는 호적등본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게 했다

(법 제15조a 제2항). 그러나, 이 개정법에서 가족대장은 단순한 증명용 문서일 뿐, 호적 자체(원본)는 아니었다.

이 가족대장을 강화하여 신분등록부 자체를 가족단위로 편제하도록 하여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외에 가족부를 채택한 것이 1937년 법이다. 1937년 법은 나치시대에 인종정책적 견지에서 사람의 혈통을 분명하게 할 필요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단위기록을 신분기록제도에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 신분법은 1937년 개정법을 기초로 하고, 그 후 가족법과 관련한 여러 법의 수정에 따라 수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그 신분을 등기했는지에 따라 기록내용이나 신분등록부의 존재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독일 신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별 편제방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난외부기방식, 가족단위편제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신분등록부에는 출생을 공증하기 위한 출생부(Geburtenbuch), 혼인을 공증하기 위한 혼인부(Heiratsbuch), 사망을 공증하기 위한 사망부(Sterbebuch), 친족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가족부(Familienbuch)의 4종류가 있다.

나. 신분법

독일에서 신분등록에 관한 법은 신분법(Personenstandsgesetz, 이하 '법'이라고 한다)이다. 이 법은 71개의 조문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공시 및 혼인부와 가족부, 제3장 출생부와 사망부, 제4장 특별한 경우에 신분의 증명과 지방의 관할권에 관해 의심스러운 경우의 결정, 제5장 신분등기부의 두 번째 등기부와 개선, 제6장 법원의 절차, 제7장 관청구역과 신분공무원, 제8장 신분등록부와 신분증서의 증명력, 제9장 결말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사람의 상태(출생·사망·혼인·가족)·지위·신분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분의 등기·공증임무를 맡고 있는 관리가 신분공무원(Standesbeamte)이다.

2. 신분등록부

가. 출생부(Geburtenbuch)

사람의 출생을 공증하는 공부는 출생부(Geburtenbuch)이다. 사람이 출생했을 때는 그 출생한 지역의 신분공무원에게 그 출생을 등기한다. 출생은 부모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출생지에 등기한다. 출생등록은 출생한 경우에만 하고, 사산했을 때는 사망부에 등록한다(법 제24조).

출생부는 원칙으로 1년에 대장 1책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출생한 때가 아니라,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신고는 1주 이내에 해야 한다(법 제16조). 또한, 신고할 때는 부모의 신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족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그것이 없을 때는 혼인증서(Heiratsurkunde)를, 모친이 미혼인 때는 모친의 출생증서(Geburtsurkunde)를 제시해야 한다.

(1) 기록사항

(가) 본란

출생부 본란에는 부모의 성명·직업·주소, 본인이 동의할 때는 종교단체의 소속 유무, 국적, 출생지와 생년월일시, 자녀의 성명과 성별, 신고인의 성명·직업·주소를 기록한다(법 제21조). 혼인의 자녀일 때는 부친을 기록하지 않는다.

(나) 적출자(嫡出子)

적출자의 출생등록의 난외에는 가족부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비적출자녀일 때는 모친의 신분표시, 모친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기록하고, 뒤에 부친이 인지했을 때는 그 인지사실을 기록한다. 적출선고를 받았거나 혼인준정일 때 도 동일하게 난외에 표기한다. 입양 및 파양사실과 양부모의 혼인부나 가족부의 소재지도 난외에 기록한다.

(다) 비적출자(非嫡出子)

비적출자의 출생등록에는 신청에 따라 공개제한이라는 도장을 난외에 찍는다(법 제61조 제3항). 이 도장이 있을 때는, 관청, 자녀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의 법정대리인, 16세 이상의 본인만이 출생부를 열람하거나, 출생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자녀가 적출선고를 받거나 혼인준정 뒤에도 여전히 제한한다. 그러나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공개한다.

(라) 입양하는 경우

독일법상 입양은 후견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이 입양결정은 법원에서 양자의 출생등록을 관할하는 신분공무원에게 통지된다. 통지를 받은 신분공무원은 그 자의 출생등록 난외에 양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부기한다. 이 때, 養親의 혼인 및 그 가족부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입양을 부기한 신분공무원은 관계지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養親의 가족부, 친가의 가족부 소재지, 양자가 기혼자일 경우에는 양자의 가족부 소재지 등이 된다.

(마) 파양하는 경우

독일법상 한번 성립된 양자를 폐기하는 파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파양결정도 재판소에서 신분등록관리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며, 자의 출생등록 난외에 양자결연이 폐기되었다는 내용을 부기한다. 養親의 일방하고만 파양이 된 경우에는 나머지 養親의 출생등록에 대해서 부기를 해 둔다.

파양은 養親의 가족부에, 養親이 독신자일 경우에는 養親의 출생등록지에 통지된다. 양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부에 통지된다. 양자가 양자결연 이전에 혼인 중의 자이었을 경우에는 친부모의 가족부에 통지된다. 가족부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체결을 공증한 신분공무원에게 통지된다. 양자가 혼외자였을 경우에는 모친의 출생등록지에 통지되며, 부친의 인지가 있었다면 부의 출생등록지에도 통지가 된다. 자가 양자가 된 후에 친부모가 혼인을 하였다면 준정이 발생되므로, 자의 출생등록지에 그 내용을 부기하고, 친부모의 가족부에 통지한다.

(바) 독신(단독)으로 養親이 된 경우

어떤 사람이 독신으로 養親이 되었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경우에, 신분공무원은 그 자의 출생등록 난외 하부에 그 통지번호를 기재한다. 어떤 사람에게

혼외자가 태어났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어떤 사람에게 유언, 상속계약, 사인처분(死因處分) 등을 기탁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후에 그 자의 사망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게 양자 또는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을 유언 등의 보고를 발신한 사람 또는 유산재판소에 통지한다.

(2) 신분증서(Personensandsurkunde)

출생부를 바탕으로 그 등본(beglaubigte Abschriften)외에 출생증서, 혈통증서, 출생증명서를 발행·교부한다.

(가) 출생증서(Geburtsurkunde)

출생증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성별, 부모의 성명·주소·종교단체의 소속유무, 출생지와 생년월일을 기록하는 난과 비고란(Vermerke)이 있다(법 제62조 제1항).

출생증서를 발행할 때, 그 출생증서에는 출생등기 후에 혼인준정, 적출선고, 비적출자라는 확인, 인지, 성의 변경, 성의 부여 등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기록한다(법 제65조). 출생등기에 입양사실을 부기했을 때는 출생증서의 부모란에는 양부모를 기록한다(법 제62조 제2항). 모친이나 부친의 배우자가 양부모일 때는 양부모와 그 배우자인 부친이나 모친을 부모란에 기록한다.

아래의 혈통증서와 출생증서 내용이 같을 때는 비고란에 '혈통증서와 일치(Entspricht der Abstammungsurkunde)'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비고란에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끝을 의미하는 도장인 -/-이 붙는다), 출생증서와 혈통증서의 기록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나) 혈통증서(Abstammungsurkunde)

이 증서는 각 사람의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자관계를 공증하기 위한 것이다. 혈통증서에는 자녀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과 출생지, 부모의 성명·주소·혈통증서에는 자녀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과 출생지, 부모의 성명·성별, 생년월일과 출생지, 부모의 성명·주소·종교단체의 소속 유무를 기록한다(법 제62조 제1항). 양자인 자녀도 부모란에는 친부모를 기록한다. 비고란

이 있고, 출생등록 후의 신분변경, 성명변경 등 난외부기가 되어 있는 사항을 지적해 둔다(법 제65조 제1항). 성별, 입양이나 파양사실 등도 기록한다. 다만, 혼인준정, 적출선언은 기록하지 않는다.

혈통증서는 혈연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때 이용한다. 예컨대, 혼인하려는 남녀는 혼인공고(Aufgebot)신청시에 가족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제시해야 하는데, 가족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비적출자인 경우)나 양자일 때는 혈통증서를 제시해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신분공무원은 근친혼, 중혼 등의 혼인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한 증거서류로써 확인한다. 당사자는 초혼인지 재혼인지를 혼인공고를 신청할 때 신고하고, 초혼이면 부모의 가족부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재혼이면 전혼의 가족부의 등본, 초본, 혼인증서 등으로 전혼의 해소를 증명해야 한다.

(다) 출생증명서(Geburtsschein)

이것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만을 기록한 것이다. 성별은 기록하지 않는다(법 제61조 c). 본인의 성명, 연령만을 확인해야 할 때는 이것만으로써 충분하다.

나. 혼인부(Heiratsbuch)

독일법상 혼인은 양 당사자가 신분공무원 면전에서, 즉 신분공무원이 두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묻고, 두 사람이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신분공무원은 두 사람이 법률에 따라 결혼한 부부임을 선언하고, 혼인을 혼인부에 등록한다(법 제9조). 혼인부에 등록하고, 신분공무원이 서명함으로써 혼인을 공증한다.

(1) 기록사항

혼인부 본란에는 ① 부부의 성명·직업·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본인이 동의했을 때는 종교단체의 소속 유무, ② 혼인의 의사표시, ③ 호적공무원의 선언, ④ 부부의 성(姓), ⑤ 증인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을 기록한다(법 제11조 제1항).

(2) 통지, 난외부기

혼인체결을 공증한 신분공무원은 관련된 신분등록부를 관할하는 신분공무원에게 통지한다.

(가) 초혼인 경우

초혼인 夫 또는 妻가 혼중자인 경우(부부 공동의 양자인 경우, 繼親子養子인 경우 포함)에는 부모(養子인 경우에는 養親)의 가족부에 통지된다. 夫 또는 妻가 혼외자일 경우(적자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 繼親子 관계가 없는 독신자에 의한 양자일 경우에는 夫 또는 妻의 출생등록지에 통지된다.

(나) 재혼인 경우

夫 또는 妻가 재혼일 경우에는 그 전혼의 가족부(수차례 혼인을 한 경우에는 바로 직전의 것)에 통지된다.

부부에게 공통의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출생등록지에, 부모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통지가 이루어진다. 그 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자의 가족부에도 통지가 된다. 관련 신분공무원에 대한 통지 이외에, 여타 부서 등에도 필요한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다) 난외부기

혼인부 난외에는 혼인무효, 혼인의 부존재, 남편이나 아내가 비적출자라는 확인, 그 밖의 혼인시까지 효력이 소급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신분에 변동이 있었을 때는 그 사실을 부기한다. 사망, 이혼 등에 따른 혼인해소사실은 가족부의 기록사항이지만, 가족부가 없을 때는 혼인부 난외에 부기한다.

(2) 혼인증서

혼인부를 바탕으로 그 등본과 혼인증서(Heiratsurkunde)를 발행한다(법 제61조a), 혼인증서는 혼인증거이다. 증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종교단체의 소속 유무(혼인부에 기록되어 있을 때), 혼인장소와 날짜를 기록한다(법 제63조)

혼인등기 후, 혼인증서 발행시까지 기록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거나, 보충했다더라도, 그 사유는 증서에 기록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만 기록한다. 남편이

나 아내가 비적출자이거나 준정되었다는 난외부기가 있을 때도 그 자체는 기록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증서에 표시한다. 혼인의 해소, 무효 등을 부기하고 있을 때는 혼인증서의 말미에 기록한다(법 제65조).

다. 사망부(Sterbebuch)

사망부는 사람의 사망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자의 주소에 관계없이 사망한 지역의 신분공무원에게 사망을 등록하고, 사산도 포함된다(법 제32조). 사망부는 그 해에 신고한 사망등록으로 편철한 장부이며, 그 전해의 사망자도 신고한 해의 사망부에 등록한다. 한편,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 다음 업무일 안에 완료하도록 정한다(법 제24조 1항, 제32조). 사망을 신고할 때는, 사망자의 신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망자가 기혼자일 때는 그 가족부의 등본이나 초본, 가족부가 없을 때는 혼인증서, 사망자가 미혼자일 때는 부모의 가족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사망자의 출생증서 등을 제시한다.

(1) 기록사항

사망부 본란에는 사망자의 성명·직업·주소·생년월일·출생지·종교단체의 소속 유무(신고인의 동의했을 때), 배우자의 성명, 미혼일 때는 미혼이라는 사실, 사망지, 사망일시, 신고인의 성명·직업·주소를 기록한다(법 제37조 제1항).

사망부 난외에는 사망자의 출생부 및 가족부의 소재지, 미혼일 때는 부모의 가족부의 소재지, 가족부가 없을 때는 혼인부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2) 통지

(가) 다른 신분공무원에 대한 통지

사망을 공증한 신분공무원은 이를 관계되는 신분공무원에게 통지한다. 사망자의 출생등록지에 대한 통지가 있고, 사망자가 혼중자이고(부부공동의 양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의 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 또한 미혼자일 경우에는 부모(양자일 경우에는 養親)의 가족부에 통지된다.

사망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혼인에 대한 가족부에 통지된다. 이는 혼인이 한쪽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에 의해 해소되어 있는 경우, 무효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

사망자가 미성년의 혼외자 또는 고아인 경우에는, 관할 후견재판소에 통지된다. 미성년자를 남기고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미성년자가 고아가 되는 경우, 또한 사망자가 미성년의 혼외자 혹은 고아인 경우에는 관할 소년국(Jugendamt)에도 통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중요한 통지처로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우선 사망자 주소지의 신고관청에 대한 통지가 있다. 관할 재무관서에는 상속세를 심사하기 위해서 매월 사망자 리스트가 송부된다. 州法상 유산재판소에 대한 통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다. 州통계국에는 적어도 매월 사망통계가 보내지게 되어 있다.

(3) 사망증서

사망부를 바탕으로 그 등본과 사망증서(Sterbeurkunde)를 발행한다(법 제61조 a). 사망증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 종교단체의 소속 유무, 배우자의 성명, 미혼일 때는 미혼이라는 사실, 사망지, 사망일시를 기록한다(법 제64조).

라. 가족부(Familienbuch)

혼인에 따라 새로운 가족이 성립했을 때는, 부부와 증인의 면전에서 새로운 가족부를 편제한다(법 제12조).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재혼하더라도 같다. 가족부는 혼인했을 때만 편제하고, 그 밖에는 편제하지 않는다. 이전에 혼인했던 자들이 다시 혼인할 때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그전 것을 부활한다(법 제12조 제3항). 가족부는 부부국적에 관계없이 신분등록법의 적용영역 안에서 성립한 혼인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외국정부의 수권이 있는 자 앞에

서 한 혼인을 혼인부에 등록한 때는 가족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다른 호적부(출생부·혼인부·사망부)가 개개의 신분법상 사실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족부는 가족구성원의 신분과 혈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부는 용지를 자유로이 빼고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족부는 부부의 신분변경, 자녀의 출생 등의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어가지만, 그것은 원칙으로 부부가 공통한 주소나 공통한 거소를 가진 지역의 호적 공무원이 관할한다(법 제13조 제1항 2문). 따라서, 부부가 혼인 뒤에 주소를 옮겼을 때는 그에 따라 가족부도 이관하고 가족부 말미에 그 이동을 기록한다. 신고관청에서 기혼자가 전입했다는 사실을 관할 신분공무원에게 통지한다. 그에 따라 신분공무원은 전주소지의 신분공무원에게 가족부의 이관을 요청한다.

남편이 신분법 적용영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지 않을 때는, 아내의 주소지나 거소에서 관할한다.(법 제13조 제2항). 부부 둘 모두가 주소가 거소를 가지지 않을 때는 베를린 제1 호적관청이 관할한다(법 제13조 제3항). 부부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는 생존배우자의 주소지나 거소에 둔다(법 제13조 제4항).

이혼하거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무효일 때와 생존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이후 가족부는 새로운 장소로 이관하지 않는다.

(1) 기록사항

가족부는 다른 장부와 달리, 가족마다 독립한 한 장부로 정리하여 보존한다. 가족부는 혼인부의 기능을 계승한 것이므로, 그 가족구성원의 바탕인 혼인 사항과 부부 각각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5조a, 제15조b). 또한, 부부와 그 친족간의 친족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종족적 혈통적 계보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에서 부부의 부모, 부부의 국적, 자녀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혼인 후 남편이나 아내의 신분이 변경했을 때는 그 사실도 기록하고, 가족부에 등기한 뒤 자녀의 신분이 변경했을 때도, 역시 기록한다.

(가) 부부란(제1란과 제2란)

부부의 관한 난으로서, 부부의 성명, 직업, 주소, 출생지, 생년월일과 소속종파, 혼인날짜, 장소, 기록의 근거를 기록한다.

(나) 부부의 혼인란(제3란)

부부의 혼인에 관한 난으로서, 혼인할 때 증인의 성명·직업과 주소, 혼인 당사자의 혼인의사선언, 신분공무원의 혼인성립선언을 기록하고, 부부, 증인과 신분공무원이 서명한다(법 제11조). 그 뒤, 부부 중 한쪽의 사망, 사망선고, 혼인취소, 이혼, 혼인무효선언이나 혼인의 부존재가 확정됐을 때는 이 사실을 난외에 기록한다.

(다) 부부의 부모란(제4란과 제5란)

부부의 부모의 성명, 주소를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비적출자일 때는 그 부친이 출생부 난외에 부기되어 있을 때만 부친을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양자일 때는 양부모를 기록한다. 혼인할 때 부모가 친부모인지 양부모인지는 가족부상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혼인 후 양자로 된 때는 가족부상에 입양사실을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그 모친이나 부친의 배우자가 입양했을 때는 양부모와 양부모의 배우자인 친부모 모두를 기록한다.

(라) 편제란(제6란)

기록의 근거 서류명과 편제연월일을 기록하고, 신분공무원이 서명한다.

(마) 부부국적에 관한 란(제7란)

부부의 국적과 그 변경, 제국시민권 등을 기록한다.

(바) 사망, 이혼, 혼인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란(제8란)

남편이나 아내의 사망, 사망선고, 이혼, 혼인의 취소·무효·부존재 등을 기록한다. 혼인의 부존재를 재판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가 족부의 자녀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사) 자녀란(제9란)

이 난에는 부부의 공동 적출자만을 기록한다(법 제15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공통적출자, 부모의 혼인으로 인한 준정 적출자, 부부 공통의 양

자, 배우자의 자녀로서 상대방의 양자로 된 자이다. 왼쪽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등기사유 등을 기록한다. 준정된 자는 출생 때부터 적출자였던 것처럼 기록한다. 따라서, 원칙으로서 준정이 되기 전 성은 기록하지 않으며, 그 준정 사실도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14세 이상일 때는 종래대로 성을 왼쪽에 기록하고, 성을 변경했을 때는 오른쪽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민법 제1720조).

부부가 공동으로 제3자를 입양했거나, 배우자의 자녀를 상대방이 입양했을 때는 그 양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를 기록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후견법원의 결정과 입양의 근거규정을 기록한다. 따라서, 입양사실은 가족부상 분명하다. 그러나 입양의 비밀유지요청(민법 제1758조)에 따라,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한다(민법 제61조 제2항). 민법 제1758조는 입양과 그 사정을 분명히 하는 사실을 조사, 공개하는 일은 양부모와 양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입양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은 친부모에게 자녀의 소재를 모르게 하고, 양자가 제3자의 공연한 참견으로 그 출생을 알게 되는 것을 막으며, 일반적으로 양친자관계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여,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조문이다. 비적출자의 출생기록의 경우와 달리 “공개제한(폐쇄)”이라는 인은 붙이지 않는다. 이것은 신청에 따른 공개제한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즉 공개는 관청의 공적 이유로서 요구를 제외하면 양친, 그 친부모, 자녀의 법정대리인, 16세 이상의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양자가 죽은 뒤에도 양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양부모의 가족부에서 양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신분증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이러한 신분등기부의 열람, 신분증서의 교부제한은 입양결정기록의 열람제한(법 제34조 제2항)과 함께 입양비밀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가족부에 기록한 뒤 자녀의 신분변경사항은 오른쪽에 기록한다. 여백이 없을 때는 비고란이 제10란에 기록한다.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제15조 제

2항).

① 자녀의 혼인

자녀가 혼인했을 때는, 그 혼인등기지 호적공무원의 통지를 바탕으로 혼인 날짜, 장소, 배우자의 성명, 부부의 성(姓)을 기록한다. 혼인은 최초 혼인만 기록하고, 이후 그 결혼한 자녀에 관한 사항은 가족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법 제15조 제4항 1문). 다만, 혼인 후 입양했을 때는 입양한 자의 가족부에 입양 사실을 기록하고, 그 친부모의 가족부상 자녀란에도 입양사실을 기록한다(법 제15조 제4항 2문).

② 자녀의 사망

자녀가 미혼인 채,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사망지를 기록한다. 사망선고일 때는 법원결정을 기록한다.

③ 입양

가족부에 기록한 자녀를 타인이 입양했을 때는 그 입양사실을 기록한다. 이 경우 양부모의 성명, 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양부모쪽 가족부상 기록과 달리, 신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공개를 제한하지 않는다. 입양 뒤는 파악하지 않는 한, 양부모 가족부상 자녀란에 계속 양자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한다(법 제15조 제4항 3문).

④ 파양

파양했을 때는 양부모의 가족부에 파양사실을 기록한다. 동일하게 친부모의 가족부에도 파양사실을 기록하고, 입양에서 파양까지 양부모의 가족부상 양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항도 친부모의 가족부에 기록한다.

⑤ 비적출자의 확인

가족부에 기록한 자녀가 비적출자로 확인됐을 때는 그 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3항).

⑥ 자녀의 성명변경

자녀의 성은 부친이 인지했을 때나 양부모가 성을 변경했을 때 등, 부모의 성변경에 따라 자녀의 성도 법률상 변경되거나, 자녀의사에 따라 변경된다.

이 때, 각각 그 사실을 오른쪽에 기록한다.

(아) 비고란(제10란)

남편이나 아내가 재혼했을 때는 비고란에 그 날짜, 장소를 기록한다. 적출자로 기록된 남편이나 아내가 비적출자로 확인됐을 때도,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록할 수 있으며, 가족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가족부를 작성한다. 반대로, 비적출자로 기록된 남편이나 아내가 인지됐거나, 부모혼인에 따라 준정된 경우, 또는 적출선고를 받았을 때는 비고란에 부친을 기록할 수 있으며, 가족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가족부를 작성한다. 준정 사실은 새 가족부의 비고란에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혼인 뒤에 입양됐을 때는 양부모, 입양결정, 근거규정 등, 입양사실을 비고란에 기록한다. 파양됐을 때는 그 사실도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의 성명이 변경됐을 때는 비고란에 기록한다. 이에 따라, 가족부의 검색용 색인도 변경한다. 그 밖에, 종교단체 등의 소속 유무에 대한 변경은 비고란에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가 재혼일 때는 제10란의 아래 난외에 그 직전 혼인에 대한 가족부 소재지와 그 검색용 색인을 지시한다.

(2) 가족부 등·초본

가족부를 바탕으로 그 등본이나 초본을 발행·교부한다(법 제61조의 a 제1호, 제4호). 등본은 가족부상 기록내용을 충실히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삭제부분, 보류, 오기정정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 초본을 신청한 때에는 개개의 자녀, 남편부모나 아내부모의 대한 기록은 생략한다(법 제65조 a 제1항). 제7란에서 제10란 중 공란은 사선을 긋든지, 종료날인(-/-)한다. 남편부모란이나 아내부모란을 기록하지 않았던 때도 같다.

(3) 가족부 관할 신분공무원에게 통지

가족부에 기록할 관련사건을 다룬 각 신분공무원은 가족부를 관할하는 신분공무원에게 통지한다. 예컨대, 출생부에서는 적출자의 출생, 인지, 준정, 적출자로 기록된 자녀가 비적출자로 확인된 사실 등을 통지한다. 혼인부에서는

자녀의 혼인, 남편이나 아내의 재혼 등을 통지한다. 사망부에서는 남편, 아내, 자녀의 사망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법원의 결정 등도 통지한다.

3. 특징

가. 가족부의 이동성

4종류의 신분등록부 중에서 출생·혼인·사망이라고 하는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발생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가족부는 부부의 주소 이전에 따라 이동되어 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가족부는 부부 주소지의 신분등록소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즉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다. 그러나 반면에 자주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소재가 불명해지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이 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나. 신분등록부 사이의 연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생존배우자, 혼인 중의 자 등은 사망자의 가족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그의 존재는 명백하며 증명력을 지닌다. 사망자에게 혼외자 또는 단독으로 맺은 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출생등록을 조사하여야 알 수 있다.

사망자의 자중 한 명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부 또는 출생등록을 조사해야 알 수 있다. 직계비속이 없어서, 제2순위의 상속인(養親과 그 직계비속)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양친란에 대한 기재를 기초로 하여, 養親의 가족부 또는 출생등록부를 조사해야 알 수 있다. 사망자가 통상적인 成年養子인 경우, 친부모도 상속권을 지니지만, 사망자의 출생등록으로 친부모 여부를 확인한다.

사망자가 혼외자이고 또한 미혼인 경우에는 그 출생등록에 의거하여 모를, 모의 출생등록 또는 가족부를 조사하여(인지가 된 경우에는 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상속인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가족부 등본 등 필요한 증명서류를 조사해 가면 상속인의 범위도 확정할 수 있으며, 상속증서를 교부받는데 필요한 상속권의 증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출생등록, 혼인등록, 사망등록은 각각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있으며, 가족부는 부부의 최후의 소재지에 있게 되므로, 관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지게 된다. 각 세대의 사람이 따로 따로 생활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1875년 법, 1937년 법, 1957년 법에 걸쳐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신분등록부의 통일과 각 신분등록부 사이의 연결도 상당히 추진되었지만, 우리와 비교하여 보면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신분등록부의 비공개

신분등록증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 특히 혼외자 및 養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한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1875년의 '신분의 공증과 혼인체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신분등록부에 대한 일반의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하였었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신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었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1937년의 신분법률은 나치시대에 있어서 종교적·인종적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에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57년 이래 독일은 나치시대의 신분등록부 오용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자유롭게, ② 관청은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을 기재한 이후에, ③ '기타의 자'는 스스로 '법적 이해관계'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신분등록부의 열람청구권과 신분증서의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이해관계' 유무는 신분공무원이 판단한다. 어떤 사람이 어

떤 신분 또는 성명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또는 신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기타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청구된 신분증서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권리요구를 실현할 수 있거나 타인의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을 때 등과 같은 특별한 정당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예를 들면 부양청구나 상속권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만,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나 족보연구의 목적은 '법적 이해관계'로 취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본인의 형제자매도 예컨대 상속관계 등의 법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신분등록부를 열람하거나 신분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養子에 대해서는 나아가 제한이 강화되어, 출생등록, 양친의 가족부의 열람, 신분등록증서의 교부는 양부모, 부모, 養子의 법정대리인, 16세 이상의 양자 본인, 공적 이익을 증명하는 관청으로 제한되고 있다. 양자의 혼인등록이나, 가족부에 대해서도, 양자·파양사실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양자의 과거의 정체가 외부에 드러날 경우, 평온하던 가정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혼인외의 자 또는 인지된 자는 '봉쇄비고란'을 두어 이에 기재한다. 봉쇄비고란에 기재된 경우, 관청·부모·자의 조부모, 자의 법정 대리인 그리고 16세에 달한 子만이 출생등록에 대한 열람과 출생신분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는 혼인 외의 출생이 무단히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자의 사망에 의해서 없어지지만,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친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혼인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혼인신고시에 신분공무원에게 혈통증서와 가족부의 인증등본 또는 가족부의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분공무원이 혹시 혼인장애사유는 없는지를 심사하도록 한다. 1998년 7월 1일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법 제3조 상의 '혼인예고'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성전환법의 적용으로 재판상 이름이 변경된 자, 또는 다른 성별에 속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제한이 강화되어, 관청과 본인으로 제한되

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개제한에 덧붙여서 개인의 신분공증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증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편의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필요이상의 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혼인 중의 자라는 사실 이상으로 본래 혼인 중의 자인지, 준정으로 혼인 중의 자가 된 것인지, 양자라는 구별을 명시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회피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독일의 신분등록법상 양자가 된 사실은 출생등록, 가족부로 알 수 있다. 단, 이의 공개가 법률상 제한되고 있으며, 가족부상의 夫 또는 妻의 부모란에 養父, 養母라고 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며, 부모로서 養親을 기재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재하는 혈통증서라고 하는 2종류의 출생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서(별도로 출생증명이 있다는), 양자결연의 비밀을 지키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라. 연방데이터보호법과 관계

위와 같은 독일의 신분등록에 관한 비공개 원칙은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관련 중요 법률로는 1990년 12월 20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이 있다. 위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한 법률인데,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물론 자동화되지 않은 정보처리에도 그 적용이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가 정보주체의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 시키고 있다. 다만, 제3자의 정당한 이해관계나 공익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광고 또는 시장·여론조사를 위한 것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를 처리한 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정보주체는 자기의 저장된 정보의 출처와 수령자 등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위 법의 규정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허용되지 않은 혹은 부정확한 처리를 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공기관은 과실과는 무관하게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권한 없이 위 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공개의 개인정보를 저장·변경 또는 유통 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 진다.

독 일 가 족 부

혼인명

배우자의 출생명

1. 부(夫)

2. 처(妻)

	혼인전가족명 이 름 직 업 출 생 일 출 생 지 등록처, 번호 등록의 근거	
--	---	--

3. 1과 2의

혼인체결 혼인체결일, 장소 _____
 등록의 근거 _____

4. 부(夫)

5. 처(妻)

부 (父)	가 족 명 이 름 주 소	부
모 (母)	가 족 명 이 름 주 소	모

6. 편제

호적공무원
 서명 _____

7. 부부의 국적에 관한 주(註)

8. 사망 - 일, 장소, 신분등록처, 번호, 부부의 사망신고, 사망일시의 확인
 - 사망일시, 법원, 서류번호, 이혼, 취소, 무효, 혼인부존재의 확인
 - 확정일, 법원, 서류번호

9. 자(子)

신분·이름의 변경
 혼인체결: 배우자의 이름, 가
 족명, 일, 장소, 등록처, 번호
 또는 사망
 -일, 장소
 등록처, 번호, 사망신고,
 사망일시의 확인-사망일시, 법
 원, 서류번호

가 족 명 · 명
 출 생 일
 출 생 지
 등록처, 번호
 등록의 근거
 날 짜, 서 명

가 족 명 · 명
 출 생 일
 출 생 지
 등록처, 번호
 등록의 근거
 날 짜, 서 명

가 족 명 · 명
 출 생 일
 출 생 지
 등록처, 번호
 등록의 근거
 날 짜, 서 명

10. 부부 및 자녀에 관한 비고

인계 _____ 등록처 _____ 인계 _____ 등록처 _____
 인계 _____ 등록처 _____ 인계 _____ 등록처 _____
 인계 _____ 등록처 _____ 인계 _____ 등록처 _____
 인계 _____ 등록처 _____ 인계 _____ 등록처 _____

Ⅷ. 스위스

1. 신분등록부(身分登錄簿)

가. 종류

스위스의 신분등록부는 4가지 종류의 개별등록부(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인지등록부, 사망등록부)와 가족등록부 등이 있다. 가족등록부는 우리의 호적과 닮은 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스위스의 신분등록제도는 1907년의 민법전(ZGB) 제39조 이하에서 그 큰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것은 민사신분령(Zivilstandsverordnung)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민사신분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은 형식적으로는 1910년 영, 1928년 영을 거쳐서 현행 1953년 6월 1일 영으로 이어졌다. 1953년 영은 195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960년 9월 13일의 개정부터 1999년 10월 27일의 개정까지 총 17번의 개정이 있었다.

다. 전산화

스위스는 국민의 신상정보를 전 스위스 차원에서 전산화하고 현행 다수의 신분 등록부를 일원화함으로써 신분등록제도의 운용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Infostar'라는 명칭을 지닌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발상은 1995년 4월 스위스 각 주의 신분제도감독관칭회의에서 제기되어, 1997년 스위스연방법무부에서 그 프로젝트의 윤곽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 11월 각 주의 법무·경찰의 장들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작업의 기틀을 잡았다.

2. 개별등록부

가. 출생등록부

(1) 사건발생지 주의

스위스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지의 출생등록부에 등록된다(영 제60조 제1항). 즉 (그림 1)의 예에서는 알베르크(지명)의 신분등록관청에 등록이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각 등록부는 가족등록부와는 별도로, 등록은 사건발생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사건별로 등록된다.

(2) 등록내용

(가) 등록사항

등록부의 견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영 제67조 제1항), 출생 연월일(시간까지 기재), 출생지, 자녀의 성명, 성별, 부모의 성명, 본적지, 주소지 등을 기재한다. 양친이 미혼일 경우에는 기타 모(母)의 출생일과 부모의 성명, 인지를 한 자녀일 경우에는 부(父)의 출생일과 부모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1976년 개정(1980년 시행)이 될 때까지는子是 적자(嫡子), 서자(庶子) 또는 인지된 서자로 표시하여 자녀의 출신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개정 전 영 제70조), 1976년도 법에서는 적자·서자 구별을 없애기로 하여 위 규정도 삭제되었다.

등록사항이나 출생등록부의 견본으로 명백하듯이 가르시아 알폰스라는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출생하였는지는 알 수 있으나, 이 아이가 ①지금도 생존해 있는지, 또는 ②이미 혼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분명하지 않다. 위 ①에 대해서는 사망등록부, 위 ②에 대해서는 혼인등록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들 등록부에서도 출생등록부와 마찬가지로 사건발생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지나 혼인체결지를 알지 못하면 이들 사실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오늘날에는 후술하는 가족등록부가 고안된 것이다.

(나)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비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子)의 혼인이나 사망과 같은 사항을 추가정

보로 사후등록할 수 있는 반면, 스위스법에는 이와 같은 추가정보는 없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출생증서에 추가정보가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타 부(父)의 직업(독일), 부모의 종교(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명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기재사항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등록부의 편성

① 책 형식 또는 루스리프(loose-leaf) 형식, ② 접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이고(그림 1의 Nr 6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참조시 찾는 수단으로 연도로 1권으로 하고, 인물명의 알파벳 순으로 색인을 작성한다(영 제32조).

나. 혼인등록부

(1) 혼인공고(婚姻公告)와 성혼절차

(가) 혼인공고

모든 유럽 국가에서는 혼인체결에 앞서서 혼인공고를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스위스 역시 혼인체결을 하는 사전절차로 혼인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영 제148조 이하).

첫째, 혼인을 공고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혼인능력증명서가 제출된다. 첨부된 견본의 문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그림 2 참조), 이것이 혼인공고 신청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공고를 할 때 신분등록관은 다양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영 제150조). 예를 들면 주소, 출생, 시민권, 성명에 관한 증명서가 그것이다. 증명서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혼인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공고를 거절당한다(영 제151조).

셋째, 공고절차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규정이 있다(영 제152조 이하). 우선(그림 3)의 공고에 대한 견본을 참조하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이의신청 등 성혼절차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성혼절차

허가서가 발행된다(영 제162조).

(나) 성혼절차

성혼절차의 절차와 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있다(영 제163조 이하). 즉, ① 공적인 성혼절차지에서 성혼절차 거행, ② 혼인의사 존재확인, ③ 혼인성립선언, ④ 성혼절차 종료 후에 당사자나 증인, 신분등록관이 혼인등록부에 서명, ⑤ 혼인증명서와 가족수첩의 교부 등이 그 내용이다(그림 4 참조).

(2) 기재사항

(가) 관할

스위스국내에서 성혼절차가 거행·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임석한 신분등록관이 혼인등록부에 등록을 한다.

(나) 등록사항

혼인등록부의 견본(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① 우선 당사자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혼인체결 날짜, 혼인체결지, 약혼자 쌍방에 관한 사항(가족명, 이름, 기혼·미혼의 구별, 본적지, 출생지와 날짜, 주소), 성혼절차 후 부부의 가족명, 성혼절차 후 처(妻)의 본적지, ② 각각의 양친 성명, 주소, 혼인경력이 있는 자는 전혼(前婚)에 관한 사항(전혼 배우자의 성명이나 혼인해소 날짜), ③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이나 출생지 등이다.

기타 사항에서는 증인의 성명이나 주소, 혼인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확인, 가족등록부에 대한 등록과 관련된 내용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영 제94조).

(3) 초본과 그 교부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초본은 모든 등록부에 대해서 작성되며, 그 교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영 제138조 이하).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초본 교부청구에는 제약이 따른다. 자기와 관련된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자의 청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양자결연과 관련된 사항 등의 등록부의 초본청구는 허가가 필요하다(영 제138조 제2항, 제3항). 한편, 초본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약이 있다.

등록부의 열람청구에 대해서 말하면 사인(私人)에게는 등록부를 열람할 권리는 명시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 이외의 사인(私人)의 열람은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상당(相當)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칸톤의 감독관청이 열람허가를 부여하며, 개개의 민사신분사건은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된다. 즉, 공개는 예외적이다(영 제29조).

3. 가족등록부

첫째, 어떠한 집단을 모아서 기록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시민권이 공통되고 친족관계이어야 한다. 따라서 서자도 포함된다. 알기 쉽게 말하면 부부(또는 독신자)와 자녀의 2세대를 등록한다.

둘째, 등록하는 곳은 본적지이다. 즉, 가족등록부는 본적지의 신분등록관이 집행한다(영 제113조 제1항), 견본(그림 5)의 예를 보면 츠갓바(지명으로 시·읍·면의 이름임)가 본적지가 된다.

가. 기재사항

(1) 등록의 대상

가족등록부는 해당 시·읍·면의 모든 시민을 등록 대상으로 한다. (영 제114조 제1항).

(2) 기재사항

견본(그림 5)에서는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그것으로 알 수 있듯이 ① 당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출생일과 출생지, 본적지(츠갓바가 된다), 성혼 절차의 장소와 날짜, ② 당사자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성명이나 국적변경 등을 기재한다(사망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견본의 예에서는 당사자 부부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당사자 이외로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3) 게시물 개시사유

즉, 어떠한 경우에 등록부를 작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규정에 의하면 혼

인체결시(견본의 예는 이와 같은 구조임), 이혼시(헤어진 夫의 본적지에서 妻를 위하여), 자녀의 출생시(독신 母를 위하여), 자녀의 인지시(독신 夫를 위하여) 등의 경우에 가족등록부를 개설·작성한다(영 제115조).

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비교

첫째, 어떤 가족등록부이든 가장 주목할 사항은 각 등록부와 연계되어 있어서 신분에 관한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분의 변경, 특히 사망, 이혼, 혼인해소·무효선고 등의 사실도 사후등록이 된다(예를 들면 독일, 스위스).

둘째,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전에는 가족등록부가 존재하였다. 폐지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거에 그 내용은 제1부에 혼인체결에 대해서, 제2부에 부부의 부모, 부부 자신, 공통 자녀, 서자, 양자 등이 등록되어 있었다.

셋째, 독일의 경우 주소지에서 가족등록부를 작성·보관한다는 것이 스위스와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다. 기타 공통의 적자(嫡子)만을 등록한다는 점에서도 스위스나 우리 나라와 다르다. 부부의 종교나 직업에 대한 기재는 스위스의 등록부와 공통되고 있다. 소속교회의 변경(예, 탈퇴)이나 가입, 나아가 부부의 양친(兩親)에 대해 그 주소까지 기재하는 점은 우리 나라 호적보다 상세하다.

4. 가족수첩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구법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가족의 신분상태를 반영하고,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기능을 지닌다(영 제146조).

가. 제도의 근거

스위스에서는 목록초본(제10장, 영 제136조 이하)의 장에서 가족수첩에 대한

규정이 있다. 관청 등과의 접촉시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나. 교부시기

우리 나라의 혼인신고서 수리에 가까운 성혼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신분등록관으로부터 가족수첩이 교부되는 것이 보통이다(영 제147조a 제1항).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는 가능하다(영 제147조 이하).

다. 기재내용

부부의 경우에 기재사항을 제시한다(영147조 b 참조).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① 부부에 대해서는 성혼절차 장소와 날짜, 가족명과 이름, 성혼절차 전의 민사신분, 성혼절차지와 출생장소나 날짜, 양친의 가족명과 이름, ② 공통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명과 이름, 본적지, 시민권 배제에 대한 기재, 출생장소와 날짜, 사후등록으로 사망에 관한 정보, ③ 기타 신분·이름·시민권 등의 변경, 양친의 사망, 子의 혼인 등, ④ 사후기재사항으로 해당 신분사항과 관련된 신분등록관이 기재를 한다(영 제147조).

라. 증거력

행정관청(주민감독관)과 접촉할 때에는 가족상황에 대한 증명역할을 한다(영 제146조). 그러나 증거력은 등록부의 초본만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혼이나 입양, 나아가 상속이나 귀화 등에 있어서 가족수첩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족증명서 즉 등록필 가족등록부의 초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기재의 정당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본적지의 신분등록관이 심사권을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서류의 추완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영 제147조).

5. 등록부 사이의 연결기능

가. 다른 등록부와 연결

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나아가 사망등록부 모두 본적지 기재와 본적(지)에 있는 가족등록부에 대한 연락 내지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명기하도록 한 구조로 되어 있다. 등록부는 아니지만 가족수첩에도 본적 기재란이 있으며, 가족등록부와 연결이 도모되고 있다.

나. 연결의 존재 여부와 방법

개별등록부(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사망등록부, 인지등록부 등 4가지 종류를 말한다)인 각 등록부 사이의 연결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등록부와는 연결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다.

가족등록부는 등록부 사이의 연결을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스위스의 가족등록부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신분등록관청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면 검색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생등록부에서도 혼인등록부에서도, 가족등록부에 대한 기재 및 이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고 있고, 가족등록부에는 이와 같이 정보가 집중된다. 게다가 스위스의 가족등록부는 본적지 보관주의가 채택되고 있어서 해당 인물의 가족상태에 대한 파악이 독일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다. 과거 가족의 추적

위에서 설명한 연결기능의 하나로, 부모의 블랏트(게시물)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면 과거 가족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신분등록부의 비공개

가. 비공개 원칙

신분등록부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영 제29조, 제138조).

법정·임의대리인은 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다(영 제29조 제2항). 신분등록관청 이외의 법원이나 행정관청은 그들의 법률적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결한 신상정보를 요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법령에 따라 공개 받을 수 있다(민법 제43a조 제3항, 제4항, 영 제29조 제3항).

“직접적이고 보호의 가치있는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일반인은, 그 정보를 당해 정보주체로부터는 직접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명백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다(민법 제43a조 제2항, 영 제29조 제4항). 이와 같은 점은 스위스의 신분등록의 공개가 독일보다도 더욱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칸톤의 감독관청은 학문적이고 신상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당해 정보주체로부터는 직접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명백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공표를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개인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수령자는 특히 ① 그 연구의 목적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정보를 익명화하고, ② 주의 감독관청의 사전동의 아래에서만 유통 시킬 수 있으며, ③ 연구결과의 공간에는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주의 감독관청은 학문적이고 개인관련적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당해 정보주체로부터는 직접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명백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공표를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보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담이 따른다(영 제29a조). 영 제30조의 형식에 의한 신상정보의 공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관리를 감독하는 칸톤의 관청은 예외적으로 신분등록부에 대한 열람을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정보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담이 따른다(영 제30a조).

각 칸톤은 출생, 사망, 혼인을 공개할 수 있으나, ① 양친 중의 한 사람이 자의 출생을, ② 최근친의 가족구성원이 사망사실을, ③ 신랑 또는 신부가

혼인의 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영 제30b조). 영 제30a조와 제30b조는 전산처리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영 제177g조 제2항).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처리장치에 옮기는 것도 금지된다.

입양에 관해서는 연방차원의 중앙목록이 있는데, 만약 전자화된 DB에 의해 이것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민사신분제도에 관한 연방기관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개작과 탐색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영 제27조 제2항). 이러한 입양에 관한 데이터는 특히 보호의 가치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나. 연방개인정보법률과 관계

위와 같은 민법과 민사신분령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는 연방개인정보법률(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연방개인정보법률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신분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43a조 제1항이 연방개인정보법률 제1조와 상응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림 1) 스위스 출생등록부

소속군
Zivilstandskreis 출생등록부
알베르크

Nr.66.
Garcia
Alfonso

 卷/페이지수/번호 1989/576/66-/-
 출생일시 1989년9월17일 -/- 22시15분
 출생지 알베르크
 가르시아, 알폰스-/-
 右의 아들/딸 가르시아, 페도로, 마리아-/-
 -/-

 [父의] 본적지 스페인 국적 -/-
 소재지 베르겐 베른 -/-
 상기의 [아들] 가르시아 geb. 루이스, 마리아-테레사-/-
 [母의] 본적지 스페인 국적 -/-
 소재지 베르겐 베른 -/-
 [등록] 등록일 1989년9월18일 -/-
 상기 신고에 의거해 병원 -/-
 에서 서면으로 제출
 또는 읽어서 확인 -/- 신분등록관 서명
 보고처 베르겐 칸톤베른 -/-
 상기의 가족등록부 -/-
 로 부터 등록 卷數 --- 게시물 --

(그림 2) 스위스 혼인등록부

VT-Fall2.2 혼인등록부

페이지 수 96 권(卷)/페이지수/번호 1989/96/45-/-

소속군 [혼인]날짜 1989년7월6일[에] -/-

아로자 군명 아로자[에]-/-

벤 포르텐 혼인등록을 위해서 신분등록관의 면전에 출두함

스츄워드 [夫의]가족명 벤 포르텐 -/-

이름

민사신분(民事身分) 독신

본적 네덜란드국적

출생지와 날짜 와토네히토(네덜란드), 1961년2월2일

부(父)의 가족명과 이름

주소

처(妻)의 가족명 이름

민사신분 1985년 3월 12일 이후.....와 이혼

본적 영국국적

출생지와 날짜 런던(영국) 1966년 7월 14일

부(父)의 가족명과 이름

모(母)의 가족명과 이름

주소 성혼[절차]의 증인

1.

2.

약혼자들이 상호 혼인의사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각자가 긍정하였기에 상기와 같은 상호합의에 따라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였음을 신분등록관이 선고한다.

혼인후의 부(夫)의 가족명

혼인후의 처(妻)의 가족명

공통 자녀

(가족명, 이름, 출생지와 날짜)

부부 부(夫)

처(妻)

증인 1.

2.